일본 건설업 허가 및 시공 체제 제도 현황과 시사점

2015. 11

최민수 ·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차 례

요약 ····· i

제1장 연구 배경 ····· 1

제2장 건설업 면허제도와 운영 실태 ····· 3

1. 건설업 허가 요건 ····· 3

(1) 일반 사항 ····· 3

(2) 건설업종별 허가 ····· 4

(3) 일반건설업과 특정건설업 허가 ····· 5

(4) 경영 업무 관리 책임자 ····· 6

(5) 영업소별 전임 기술자 ····· 7

(6) 재정적 기반 또는 금전적 신용 ····· 9

(7) 성실성 ····· 10

2. 일본의 건설업 허가 실태 ····· 11

3. 시사점 ····· 19

(1) 건설업 등록시 경영 임원에 대한 검증 ····· 19

(2) 기술 자격뿐만 아니라 해당 공사의 시공 경험 검증 ····· 19

(3) 도급업자(contractor)로서 성실성 검증 ····· 19

(4) 전기, 소방시설 공사 등을 건설업종으로 분류 ····· 20

제3장 건설업종별 도급 범위 및 시공 자격 ····· 23

1. 건설업종별 도급 가능한 공사 유형 ····· 23

(1) 건설업종별 도급 가능한 공사 유형의 구체적 예시 ····· 23

(2) 건설업종별 도급 범위의 구분 사례 ····· 26

2. 부대공사의 정의 및 유형 ····· 30

3. 복합공사(일식공사 및 부대공사)의 시공 자격 ····· 31

(1) 부대공사(附帶工事)의 경우 ····· 31

(2) 일식공사(一式工事)의 경우 ····· 31

4. 시사점 ····· 33
(1) 건설업종별 도급 자격의 명확화 ····· 33
(2) '부대공사' 규정의 적용 범위 ····· 33
(3) 복합공사의 시공권 ····· 34

제4장 발주기관 등록 및 경영사항 심사 ····· 35
1. 발주기관 입찰참가자격 심사 및 등록 ····· 35
(1) 공시 사례 ····· 35
(2) 업종 구분 및 발주 공사의 종류 ····· 35
(3) 신청 시기 및 서류 ····· 36
(4) 참가 자격 및 심사 ····· 36
2. '경영사항심사' 제도 ····· 38
(1) 경영사항 심사는 공공공사 입찰 참가의 필수 사항 ····· 38
(2) 심사 신청 및 심사 기관 ····· 38
(3) 심사 기준일 및 유효 기간 ····· 38
(4) 심사 항목 및 방법 ····· 39
3. 시사점 ····· 41

제5장 건설 현장의 기술자 배치 기준 ····· 43
1. 기술자 배치 기준 ····· 43
(1) 「건설업법」상 기술자 배치 기준 ····· 43
(2) 전문 공사의 기술자 배치 기준 ····· 45
(3) 전임(專任)의 감리·주임 기술자가 필요한 공사 ····· 45
(4) JV(공동기업체) 공사의 기술자 배치 ····· 47
2. '감리기술자' 자격 조건 및 임무 ····· 49
(1) '감리기술자'의 자격 조건 ····· 49
(2) 감리기술자 배치 요건 및 직무 ····· 50
(3) 감리기술자 강습 수료증 및 교육기관 ····· 52
(4) 1급 국가자격 등에 의한 감리기술자의 자격 요건 ····· 54
(5) 실무 경험에 의한 감리기술자의 자격 요건 ····· 55
(6) 감리기술자 자격증 교부 ····· 55

3. 시사점 ····· 56

제6장 건설 하도급 및 시공 체제 규정 ····· 59

1. 건설업 하도급 규정 ····· 59
(1) 하도급계약 체결 순서 ····· 60
(2) 하도급 계약서의 구성 ····· 61
(3) 하도급 대금의 적정한 납부 ····· 62
2. 건설 현장의 시공 체제 관리 ····· 63
(1) 시공체제대장의 개요 ····· 63
(2) 시공체제대장의 작성 순서 ····· 63
(3) 시공체제대장의 기재 내용 및 첨부 서류 ····· 65
(4) 시공체제대장에 기재된 하도급자의 범위 ····· 66
3.「건설업법」위반 등 조치 ····· 68
4. 시사점 ····· 68
(1) 일괄 하도급시 원도급자 외 하도급자 처벌 ····· 68
(2) 하도급 공사 비용의 견적 기간 명시 ····· 69
(3) 하도급, 재하도급을 포함하여 시공체제대장 작성 ····· 69

참고 문헌 ····· 71

표 차례

<표 2-1> 원도급업체가 지도해야 할 법령 및 규정 ····· 6
<표 2-2> 일반건설업과 특정건설업 허가 업체 수 ····· 13
<표 2-3> 일본 건설업 허가주체별 허가 업체 수 ····· 13
<표 2-4> 일본의 건설업종별 허가 업자 수 추이 ····· 14
<표 2-5> 자본금 계층별 허가 업자 수 ····· 16
<표 2-6> 건설업종별 자본금 계층별 허가 업자 수 ····· 17
<표 2-7> 건설업종별 자본금 계층별 허가 업자 수 점유비 ····· 18
<표 2-8> 한국과 일본의 건설업 분류 체계 비교 ····· 21
<표 3-1> 일본의 건설업종 분류 체계 ····· 24
<표 4-1> 경영사항 심사 항목 및 기준 ····· 40
<표 5-1> 일본의 「건설업법」상 기술자 배치 규정 ····· 43
<표 5-2> 특정 건설업의 기술자 배치 기준 ····· 49
<표 5-3> 1급 국가자격 등에 의한 감리기술자 자격 요건 ····· 54
<표 5-4> 실무 경험에 의한 감리기술자의 자격 요건 ····· 55

그림 차례

<그림 2-1> 일본의 건설투자 및 허가 업체 수, 취업자 수 추이 ····· 12
<그림 2-2> 건설업 허가자의 업종별 취득 비율 ····· 15
<그림 4-1> 공공공사 경쟁 참여 자격 심사의 개요 ····· 37
<그림 5-1> 감리기술자 자격증의 보유자 수 ····· 51
<그림 5-2> 감리기술자 자격증 교부 신청과 감리기술자 강습 신청의 관계 ····· 53
<그림 5-3> 감리기술자 자격증(견본) ····· 56

요 약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건설업 면허의 불법 대여가 현안 과제로 대두된 바 있고, 건설업종별 영업 범위 관련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건설현장의 시공 체제와 관련하여 불법·탈법적인 요소에 대응하여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일본 건설업 면허제도의 운용 실태 및 건설업종별 영업 범위, 하도급제도, 시공 체제 규정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내 건설업 면허 및 시공 체제 등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선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제2장 건설업 면허제도와 운영 실태

1. 건설업 허가 요건

- 일본의 경우, 건설공사 도급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법」 제3조에 의거해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구분 없이 건설업 허가를 받아야 함.
  - 건설업 허가의 유효 기한은 5년으로서, 5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유효 기한 경과로 효력이 상실됨.
  - 건설업자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국토교통 대신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하나의 지역에만 영업소를 둔 경우에는 당해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취득해야 함.

- 국토교통성 대신이나 도도부현 지사는 건설업 허가를 할 경우에는 1) 경영 임원, 2) 영업소별 전임자, 3) 성실성, 4) 재산적 기초 등의 법적 기준을 고려하고,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건설업 영위를 허가함.

(1) 건설업종별 허가

- 「건설업법」에서는 건설공사의 종류를 2개의 일식(一式)공사와 26개의 전문공사로 분류하고, 그 공사의 종류에 따라 건설업종마다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건설업종에는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포함함.

(2) 일반건설업과 특정건설업 허가

- 경미한 공사만을 맡아 영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도급·하도급과 관계없이 건설업 허가를 받아야 함. 건설업 허가시에는 업종마다 일반건설업 허가 또는 특정건설업 허가 중 어느 것이든 취득하도록 되어 있음.
  · 단,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를 도급받아 3,000만엔(건축 일식공사의 경우는 4,500만엔) 이상을 하도급 계약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특정건설업' 허가를 받아야 함.

(3) 경영업무 관리 책임자

- 건설업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상근 임원 중 1인,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지배인 중 1인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함.
  · ①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설업에 5년 이상 경영업무 관리 책임자로서 경험이 있는 자
  · ②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설업 이외의 건설업에 7년 이상 경영업무 관리 책임자로서 경험이 있는 자
  · ③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설업에 7년 이상 경영업무 관리 책임자에 준하는 지위(사용자가 법인인 경우는 임원 다음의 직제상 지위, 개인인 경우 당해 개인 다음의 직제상 지위)에서 경영 업무를 보좌한 경험이 있는 자
  · ④ 그 외 국토교통 대신이 ①, ②, ③과 동등 이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영업소별 전임 기술자

- 일반건설업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영업소마다 다음에 열거한 기술자를 전임으로 두어야 함. 이때, 해외 자격 취득자나 해외 건설공사 실무 경험이 있는 자를 전임 기술자로 하려면 ④에 의한 국토교통 대신의 인정이 필요함.
  - ① 지정 학과(건설업의 종류별 지정 학과)를 이수하는 고등학교(6년제 중등교육학교 포함)를 졸업한 후,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설업과 관계있는 건설공사에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② 지정 학과를 이수하는 대학 또는 고등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설업과 관계있는 건설공사에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③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설업과 관계있는 건설공사에 10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④ 기타 국토교통 대신이 ①, ②, ③과 동등 이상의 지식 및 기술 또는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특정건설업 허가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건설업 자격이 허가 요건으로 구비되어야 하며, 전임자의 기술 자격을 강화하고 있는데, 영업소마다 기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전임자를 두어야 함(「건설업법」 제15조 제2호).
  - 일반건설업의 전임 기술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설업과 관련된 건설공사에서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고, 그 도급 대금이 4,500만엔 이상인 건에 관해 2년 이상 지도·감독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자

- 특정건설업 가운데 시공 기술의 종합성, 시공 기술의 보급 상황,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령에서 정하는 토목, 건축, 전기, 관(管), 강구조물, 포장, 조원(造園) 공사업 등 7종의 '지정건설업'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그 영업소마다 두어야 하는 전임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국토교통성 대신이 이와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자여야 함.

(5) 재정적 기반 또는 금전적 신용

- 일반건설업 허가에서는 계약을 이행하는 데 충분한 재정적 기반 또는 금전적 신용이 있어야 하며,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함.
  - ① 자기자본 금액이 500만엔 이상일 것
  - ② 500만엔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 ③ 허가 신청 전 과거 5년 간 허가를 받아 계속 영업한 실적이 있을 것
  - 상기 요건 중 1개 항목을 충족해야 함.

- 특정건설업 허가는 8,000만엔 이상의 계약을 이행하는 데 충분한 재정적 기반이 있어야 하며,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결손액이 자본 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② 유동비율이 75% 이상일 것
  - ③ 자본금이 2,000만엔 이상인 동시에 자기자본 금액이 4,000만엔 이상일 것

(6) 성실성

-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임원, 지점 또는 영업소 대표가 개인이면, 본인 또는 지배인이 도급계약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를 할 우려가 없어야 함.

2. 시사점

- 건설업 등록시 경영 임원에 대한 자격 검토
  - 일본의 경우 건설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기술자 배치 및 자본금 요건 충족 이외에 대표자나 경영 임원이 최소 5년 이상의 건설업 경력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건설업 경력이 없는 자가 기술 인력을 일시 임대하여 건설업 허가를 받은 후 일괄 하도급하는 등의 폐해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

- 기술 자격뿐만 아니라 해당 공사의 시공 경험 검증
  · 일본의 경우, 건설업 허가를 위한 기술자 요건 가운데 단순히 기술 자격증을 갖추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업종별로 해당 공사의 실무 경험을 검증하고 있음. 예를 들어 방수공사업을 등록할 경우, 등록된 기술자가 방수공사 시공 경험이 있는가, 혹은 방수공사 시공 능력이 있는가를 검증함.
  · 이는 건설업 면허를 부여함에 있어 기술자의 해당 공사 현장 경력을 요구함으로써 직접시공 능력을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특성이 있음.

- 도급업자(contractor)로서 성실성 검증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대개 수억원에서 수십 억원에 이르므로 신의 성실에 입각한 도덕성이 매우 중요
  · 일본의 경우 법인이나 임원, 지점 또는 영업소 대표가 도급계약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를 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전기공사업이나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건설업종에 포함하여 분류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건설업종 분류 가운데 토건공사업이나 조경시설물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은 일본의 건설업 면허 분류에는 없음.
  · 일본의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발주기관의 유자격자 명부 등록시 토목이나 건축 면허를 갖춘 자가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의 유자격자 명부에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임.

제3장 건설업종별 도급 범위 및 시공 자격

1. 건설업종별 도급 범위

- 일본에서는 건설업종별로 구체화된 업무를 명시하여 업종 간 분쟁을 방지하고 있음. 또, 국토교통성의 '건설업 허가사무 가이드라인'에서는 도급 자격이 명확치 않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도급 자격이 있는 해당 업종을 명시하고 있음.

- 임도(林道)나 사방(砂防)시설 등의 산림 토목공사, 운동장 시설공사, 놀이시설 설치공사 등을 건설업의 법적 범위에 명확히 규정하여 유사 건설업종의 등장을 방지

2. '부대공사' 규정의 적용 범위

- 건설업 영위를 허가받은 건설업자는 허가된 업종 외에 그 공사와 관련된 부차적인 다른 종류의 건설공사를 한꺼번에 수주하는 것이 가능함(「건설업법」 제4조).
  - 여기서 '부대공사'란 a) 주요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 필요가 생긴 다른 종의 건설공사 또는 b) 주요 건설공사의 시공에 따라 필요가 생긴 다른 종의 건설공사로서, 그 자체가 독립적인 사용 목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위와 같은 부대공사 조항 이외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공사 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복합공사로서,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이 전체 공사 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까지 부대공사로 확대 해석하여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를 보면,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복합공사에 한하여 해당 전문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3. 복합공사(일식공사 및 부대공사)의 시공 자격

- 일본의 경우,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위해서는 각 세부 공종별로 해당 공종의 건설업 허가가 필요하지만, 부대공사 및 일식(一式)공사의 경우, 해당 업종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해당 기술자만 갖추면 해당 공종의 직접 시공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인정되고 있음.

(1) 부대공사(附帶工事)의 경우

- 부대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던지, 혹은 그 업종과 관련된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만 직접 시공이 가능함.

(2) 일식공사(一式工事)의 경우

-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자가 일식공사를 수주할 경우, 이를 시공하는 방법은 하도급을 주거나 혹은 직접 시공하는 방법이 있음.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할 경우 해당 전문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함.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해당 세부 공종의 면허에 부합되는 기술자를 두고 시공하여야 함.

제4장 발주기관 등록 및 경영사항 심사

1. 발주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심사 및 등록

- 일본의 발주기관에서는 통상 2년마다 건설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경영사항 심사 결과와 자체적인 주관적 심사를 통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고 유자격자 명부에 등록하고 있음.
  - 이때, 경영사항 심사는 공공공사 입찰 참가시 필수 사항으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직접 원도급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경영사항 심사를 받아야 하며, 경영사항 심사 결과는 일반경쟁 입찰에서 경쟁 참가 자격 심사나 지명경쟁 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 부여 등에 활용됨.
  - 심사 항목 중 경영사항의 심사는 경영사항 분석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財)건설업정보관리센터에서 담당함.

2. 시사점

- 일본의 경우,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면 단순히 건설업 허가증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며, 시공능력이나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경영사항 심사를 통하여 점수를 받고, 이를 토대로 발주기관에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체제임.

- 우리나라는 발주자별로 유자격자 명부 운용이 미흡하며, 유자격자 명부를 운용하더라도 등록업자 수가 과다하고, 일본의 경영사항 심사 등과 같은 평가 체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음.
  -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평가 결과를 단순히 도급 하한액 결정이나 등급 제한 입찰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공사 입찰 참가를 위하여 반드시 시공능력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제5장 건설 현장의 기술자 배치 기준

1. 기술자 배치 기준

- 건설업 허가를 갖고 있는 건설업자는 영업소에 반드시 전임 기술자 1명을 보유하지만, 실제 공사에서는 현장마다 기술자를 두어야 함.
  - 공공공사 입찰의 경우 공사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할 수 없는 건설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미리 확보해야 함.

- 공사 현장에 갖추어야 할 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음.
  - 주임 기술자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도급 금액의 크기, 원도급이나 하도급에 관계없이 반드시 공사 현장 시공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주임 기술자를 두어야 함.
  - 감리 기술자 :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그 가운데 3,000만엔(건축 일식공사는 4,500만엔) 이상을 하도급 계약하여 시공할 경우에는 주임 기술자를 대신하여 감리 기술자를 두어야 함.

- 전임의 감리·주임 기술자가 필요한 공사
  - 도로, 철도 등 공공성 있는 공사는 공사 1건의 도급 금액이 2,500만엔(건축 일식공사의 경우는 5,000만엔) 이상인 공사에 대해 공사 현장마다 전임(專任) 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며, 전임 기술자의 배치는 하도급 공사라도 필요함.

2.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우, 공사 예정금액을 30억원, 100억원, 300억원, 500억원, 700억원으로 구분하여 공사 규모가 커질수록 배치 기술자의 등급을 강화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단순히 하도급 금액 3,000만엔을 기준으로 감리 기술자와 주임 기

술자로 이원화하여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음.

・일본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특히 중소 규모 공사에서 전임 기술자 배치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완화되어 있음.

제6장 건설 하도급 및 시공 체제 규정

1. 건설업 하도급 규정

- 일본에서는 공공공사에서 일괄 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이 있으면 합법적으로 인정함.

・일괄 하도급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감독 처분(영업정지)이 행해지는데, 이때 일괄 하도급 공사를 발주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수주 받은 하도급자도 감독 처분(영업 정지)의 대상이 됨.

2. 건설 현장의 시공 체제 관리

- 특정건설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 체결한 하도급 계약의 총액이 3,000만엔(건축 일식공사는 4,500만엔) 이상일 경우, 시공체제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음.

・시공체제대장은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를 불문하고 작성해야 하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공사 현장마다 갖추어 둘 필요가 있음.

- 시공체제대장의 작성을 통해서 원도급업체의 현장 시공 체제를 파악함으로써 ① 품질・공정・안전 등 시공상의 트러블 발생, ② 불량 부적격 업체의 시공 참가와 「건설업법」 위반(일괄 하도급 등), ③ 안이한 중층 하도급에 따른 생산 효율 저하 등을 방지할 수 있음.

3. 시사점

- 우리나라에서는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공사대장을 작성·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시공체제대장 등록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제도의 도입 취지와 등록 자료의 범위, 그리고 시공체제대장의 의무화 대상 업체 등에서 차이가 존재함.
  - 우리나라의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공사대장 등록은 사실상 공사 실적을 등록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본의 시공체제대장은 공사 실적과 더불어 2단계 및 3단계 하도급자까지 시공체제대장에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함.

제1장 연구 배경

- 최근 건설업면허의 불법 대여가 현안 과제로 대두된 바 있고,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관련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건설현장의 시공체제와 관련하여 불법·탈법적인 요소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음.
  - 2015년 2월에는 최근 4년 간 7,336회에 걸쳐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주고, 총 18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사례가 적발된 바 있음.
  -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후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 대여하다가 적발되어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업체는 총 135개사에 달함.
  - 건설업종별 영업 범위와 관련해서 최근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와 관련된 논쟁이 확산된 바 있으며, 상하수도공사나 조경공사 등에서 발주기관별로 입찰참가자격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존재함.

- 이러한 건설업 자격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업 면허나 건설업종의 영위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외국 제도의 벤치마킹(bench-marking)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설업 면허 제도와 시공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건설업법」을 중심으로 관련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일본의 건설업 면허 및 영업 범위 제도는 국내와 다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 일반건설업, 특정건설업, 지정건설업으로 구분하여 기술자 보유기준을 달리 규정
  - 기술인력뿐만 아니라 경영임원의 자격 규정
  - 영업소마다 전임기술자 1인 배치
  - 건설업종의 분류 체계가 국내와 상이
  -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건설업종별로 명확한 업무 범위 규정 등

- 또, 건설현장의 시공체제와 관련하여 2001년 4월 시행된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 계약 후 적정한 시공체제의 확보 등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일본 건설업 면허 제도의 운용 실태 및 건설업 영업 범위, 하도급 관련 규정, 시공 체제 관련 규정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내 건설업 면허 및 시공 체제 등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제2장 건설업 면허제도와 운영 실태

1. 건설업 허가 요건

(1) 일반 사항

- 일본은 건설공사 도급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법」 제3조에 의거하여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구분 없이 건설업 허가를 받아야 함.
  - 건설업 허가를 받지 않으면 통상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건설업 허가는 필수 사항임.
  - 건설업 허가의 유효기한은 5년으로서, 5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유효기한 경과로 효력이 상실됨.

- 건설업의 허가는 국토교통대신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담당하며, 그 구분은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함.
  - 건설업자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국토교통대신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하나의 지역에만 영업소를 둔 경우에는 당해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취득해야 함.
  - 이와 같은 구분은 영업소 소재지에 의해서만 구별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영업이 가능함.
  - 이때, 국토교통대신 허가의 경우도 신청 창구는 영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됨.

- 국토교통성대신이나 도도부현 지사는 건설업 허가를 할 경우에는 1) 경영 임원, 2) 영업소별 전임자, 3) 성실성, 4) 재산적 기초 등의 법적 기준을 고려하고,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건설업 영위를 허가함.[1)]

1) 일본 「건설업법」 제7조의 규정을 보면, 국토교통성 장관 혹은 도도부현 지사는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⑵ 건설업종별 허가

- 「건설업법」에서는 건설공사의 종류를 2개의 일식(一式)공사와 26개의 전문공사로 분류하고, 그 공사의 종류에 따라 건설업종마다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일본의 건설업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구분 없이 28종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 가운데 일식공사(一式工事)인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은 우리나라의 종합건설업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는 어느 정도 전문건설업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전기공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을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법적인 건설업종 내에 전기공사업[2], 전기통신공사업[3], 소방시설공사업[4] 등을 포함하고 있음.

다음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허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대표이사, 집행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함. 이하 동일) 중 상근인 자 한명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자 또는 그 지배인 중 한 사람이 다음의 어딘가에 해당하는 자일 것.

イ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설업에 관해 5년 이상 경영업무의 관리책임자로서의 경험을 가진 자

ロ 국토교통성 대신이 イ에서 말하는 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임을 인정한 자

二 영업소 마다 다음 어딘가에 해당하는 자로 전임자를 둔 자일 것.

イ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설업과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해 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에 따른 고등학교(구중등학교령(1943년칙령 제36호)에 따른 실무학교를 포함. 이하 동일) 혹은 중등교육학교를 졸업한 후 5년 이상, 또는 동법에 따른 대학(구대학령(1918년 칙령 제388호)에 따른 대학을 포함. 이하 동일) 또는 고등전문학교(구전문학교령(1903년 칙령 제61호)에 따른 전문학교를 포함. 이하 동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실무 경험을 가진 자로 재학 중에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학과를 이수한 자

ロ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설업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해 10년 이상 실무 경험을 가진 자

ハ 국토교통성 장관이 イ 또는 ロ에서 말한 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식 및 기술 또는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한 자

三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임원 혹은 정령에서 정하는 사용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자 또는 정령에서 정하는 사용인이 도급계약에 관해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를 할 염려가 확실히 없는 자일 것.

四 도급계약(第三條 第一項 단서의 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와 관련된 것을 제외)을 이행하기에 족할 정도로 재산적 기초 또는 금전적 신용이 분명한 자일 것.

2) 발전 설비, 변전 설비, 송배전선공사, 구내 전기 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 예를 들면, 발전 설비공사, 송배전선공사, 인입선공사, 변전 설비공사, 구내 전기 설비(비상 전기 설비를 포함)공사, 조명 설비공사, 전차선공사, 교통 신호 설비공사, 네온 장치공사, 피뢰침공사, 전기 방식(防食)공사, 콘센트공사, 계측장치공사 등.

3) 유선 전기통신설비, 무선 전기통신설비, 방송기기설비, 데이터 통신설비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예를 들면, 전기통신 선로설비공사, 전기통신기계 설치공사, 방송기계 설치공사, 안테나 설비공사, 데이터 통신 설비공사, 정보제어 설비공사, TV 전파장애 방제설비공사 등.

4) 화재경보 설비, 소화 설비, 피난 설비 혹은 소화 활동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공작물에 설치하는 공사. 예를 들면, 옥내 소화전 설치공사,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물이나 거품, 불연성 가스, 증발성 액체 또는 분말에 의한 소화설비공사, 옥외 소화전 설치공사, 동력소방펌프 설치공사, 화재경보설비공사, 누전화재경보기 설치

- 건설업 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 해당 공사의 종류 중 필요한 업종을 선택해 「건설업법」에서 규정하고 자본금이나 기술자 등 허가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해야 함.

(3) 일반건설업과 특정건설업 허가

- 건설업은 업종마다 일반건설업 허가 또는 특정건설업 허가 중 어느 것이든 취득하도록 되어 있음.
  - 경미한 공사만을 맡아 영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원도급・하도급과 관계없이 '일반건설업' 허가를 받아야 함.
  - 단,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를 도급받아 3,000만엔(건축일식공사의 경우는 4,500만엔) 이상을 하도급 계약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특정건설업' 허가를 받아야 함.

- 일반건설업 혹은 특정건설업인지의 판단은 도급하는 금액에는 한계가 없으며, 하도급을 발주하는 액수에 의하여 결정됨.
  - 또, 공사 규모도 관계가 없어 비교적 규모가 큰 공사를 원도급으로 수주한 경우에도 그 전부를 원도급에서 자사 시공하거나 하도급발주 금액이 3,000만엔 미만이면 일반건설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하도급 발주 금액에 따라 특정건설업의 허가가 필요한 요건은 주계약자에 대해서만 요구하고 있으며, 1차 이하로 도급 계약된 건설업자는 이러한 제한이 없음
  - 1차 하도급업체가 2차 하도급업체에 발주하는 액수에 제한이 없으며, 발주 금액에 의거하여 특정건설업이나 일반건설업 조건도 없음.

- 특정건설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건설공사를 도급받고, 원도급자로서 하도급업체가 「건설업법」, 「건축기준법」, 「근로기준법」, 「노동안전위생법」 등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함.
  - 이때, 하도급업체는 직접 하도급업체뿐만 아니라 재하도급자를 포함하여 공사에 종사한 모든 하도급업체가 대상이 됨.

공사, 비상경보 설비공사, 금속제 피난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또는 배연설비의 설치공사 등.

・원도급업체는 현장의 법령 준수를 위한 지도나 하도급업체의 법령 위반에 대한 시정 지도, 하도급업체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 행정청 통지에 대한 책무를 가짐.

<표 2-1> 원도급 업체가 지도해야 할 법령 및 규정

법률명	내용
「건설업법」	하도급자 보호에 관한 규정, 기술자의 배치에 관한 규정 등 법률의 모든 규정이 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특히 다음 항목에 유의할 것. ・건설업 허가(3조) ・일괄 하도급의 금지(22조) ・하도급대금의 지불(24조의 3) ・검사 및 확인(24조의 4) ・주임기술자의 배치 등(26조, 26조의 2)
「건축기준법」	・위반 건축의 시공정지 명령 등(9조 1항 10항) ・위해방지의 기술 기준 등(90조)
「택지조성등규제법」	・설계자의 자격 등(9조) ・택지조성공사의 방재 조치 등(13조 2항・3항・4항)
「노동기준법」	・강제 노동 등의 금지(5조) ・중간 착취의 배제(6조) ・임금의 지불 방법(24조) ・근로자의 최저 연령(56조) ・연소자 및 여성의 갱내 노동의 금지(63조, 64조의 2) ・안전 위생 조치 명령(96조의 2 제2항, 96조의 3 제1항)
「직업안정법」	・근로자 공급 사업의 금지(44조) ・폭행 등에 의한 직업 소개 금지(63조 1항, 65조 8호)
「노동안전위생법」	・위험, 건강 장해의 방지(98조 1항)
「노동자파견법」	・건설노동자 파견 금지(4조 1항)

(4) 경영업무 관리 책임자

- 건설업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상근임원 중 1인,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지배인 중 1인이 아래의 ①~④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함(「건설업법」 제7조 1호, 제15조 1호).[5] 이때, 해외에서 건설업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자를 경영업무 관리 책임자로 하기 위해서는 ④의 국토교통대신의 인정이 필요함.

・①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설업에 5년 이상 경영업무 관리 책임자로서의 경험이

5) 허가를 취득한 후에 경영 업무의 관리 책임자가 퇴직하고 후임이 부재된 경우에는 허가 요건 결여로 인하여 허가 취소(「건설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가 된다. 이 때문에 이러한 부재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선임하는 등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있는 자

- ②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설업 이외의 건설업에 7년 이상 경영업무 관리 책임자로서의 경험이 있는 자
- ③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설업에 7년 이상 경영업무 관리 책임자에 준하는 지위(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다음의 직제상 지위, 개인인 경우 당해 개인 다음의 직제상 지위)에서 경영업무를 보좌한 경험이 있는 자[6)]
- ④ 그 외 국토교통대신이 ①, ②, ③과 동등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영업소별 전임기술자

1) 일반건설업

- 일반건설업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영업소마다 다음에 열거한 기술자를 전임으로 두어야 함. 이때, 해외자격 취득자 또는 해외에서 건설공사 실무 경험이 있는 자를 전임기술자로 하기 위해서는 아래 여러 경우 중 ④에 의한 국토교통대신의 인정이 필요함(「건설업법」 제7조 제2호).

- ① 지정학과(건설업의 종류별 지정학과)를 이수하는 고등학교(6년제 중등교육학교 포함, 이하동일)를 졸업한 후,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설업과 관계있는 건설공사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② 지정학과를 이수하는 대학 또는 고등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설업과 관계있는 건설공사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③ 허가 받으려 하는 건설업과 관계있는 건설공사에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6)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에 관한 경영 업무 관리 책임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고, 다음 중 하나의 경험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a) 경영 업무 관리 집행에 관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뒤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서 구체적인 권한 이양을 받고 그 권한에 근거하여 집행 임원 등으로 5년 이상 건설업의 경영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한 경험
   b) 7년 이상 경영 업무를 보좌한 경험
   (참고) 여기서 말하는 법인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자를 말한다.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이사
   - 위원회 설치 회사의 집행 역
   - 지분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직원
   -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재단법인 또는 협동조합, 협업조합 등의 이사

・④ 기타 국토교통대신이 ①, ②, ③과 동등 이상의 지식 및 기술 또는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특정건설업

- 특정건설업(지정건설업 제외) 허가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건설업 자격이 허가 요건으로 구비되어야 하며, 전임자의 기술자격을 강화하고 있는데, 영업소마다 다음의 어딘가에 해당하는 자로 전임자를 두어야 함(「건설업법」 제15조 제2호).

・① 일반건설업의 전임기술자 기준(「건설업법」 제7조 제2호 ①,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자 중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설업과 관련된 건설공사에서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고, 그 도급 대금이 4,500만엔 이상인 건에 관해 2년 이상 지도・감독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자
・②「건설업법」 제27조 제1항[7]의 규정에 따른 기술 검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시험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설업의 종류에 따라 국토교통성대신이 정하는 것에 합격한 자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면허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설업의 종류에 맞춰 국토교통성대신이 정하는 것을 받은 자(1급 시공관리기사 등의 국가 자격자)
・③ 국토교통성대신이 ① 또는 ②에서 말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능력을 보유한 자라고 인정한 자

3) 특정건설업 가운데 7종의 지정건설업

- 특정건설업 가운데 시공 기술(설계도서에 따라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

7)「건설업법」 제 27조(기술검정)
1. 국토교통성 장관은 시공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고하는 자에 대해서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2. 前項의 검정은 학과시험 및 실지시험(實地試驗)으로 행한다.
3. 국토교통성 장관은 제1항의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4. 합격증명서 교부를 받은 자는 합격증명서를 멸실(滅失)하거나 손상시켰을 때에는 합격증명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5. 제1항의 검정에 합격한 자는 정령에서 정하는 칭호를 붙일 수 있다.

해 필요한 전문 지식 및 그 응용 능력을 말함)의 종합성, 시공 기술의 보급 상황,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령에서 정하는 건설업(이하「지정건설업」이라고 함)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그 영업소마다 두어야 하는 전임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국토교통성대신이 이와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인정한 자여야 함.

- 지정건설업은 다음과 같이 7개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음.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관(管)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포장공사업
・조원(造園)공사업

- 특정건설업(지정건설업에 한함) 허가의 경우(「건설업법」 제15조 제2호)

・①「건설업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 검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시험으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설업의 종류에 따라 국토교통성대신이 정하는 것에 합격한 자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면허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설업의 종류에 맞춰 국토교통성대신이 정하는 것을 받은 자(1급 시공관리기사 등의 국가 자격자)
・② 국토교통성대신이 ①에서 말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능력을 보유한 자라고 인정한 자

(6) 재정적 기반 또는 금전적 신용

- 일반건설업 허가에 있어 계약을 이행하는 데 충분한 재정적 기반 또는 금전적 신용이 있어야 함.「건설업법」 제7조 4호, 제15조 3호에 의해 일반건설업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설업 허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됨.

・① 자기자본[8] 금액이 500만엔 이상일 것
・② 500만엔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9]이 있을 것
・③ 허가 신청 전 과거 5년 간 허가를 받아 계속 영업한 실적이 있을 것
・상기 요건 중 1개 항목이 충족해야 함

- 특정건설업 허가는 8,000만엔 이상의 계약을 이행하는 데 충분한 재정적 기반이 있어야 함.「건설업법」제7조 4호, 제15조 3호에 의해 특정건설업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설업 허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됨.

・① 결손액[10]이 자본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② 유동비율[11]이 75% 이상일 것
・③ 자본금액[12]이 2,000만엔 이상이고, 동시에 자기자본 금액이 4,000만엔 이상일 것

(7) 성실성

-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임원, 지점 또는 영업소 대표가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지배인이 도급계약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를 할 우려가 없어야 함(「건설업법」제7조 제3호, 제15조 제1호).

・국토교통성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는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과거「건설업법」등의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혹은 허위 기재 등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13]

---

8)「자기자본」이란 법인에 있어서는 자본금, 신주식불입금 또는 신주신청증거금, 법정준비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을, 개인에 있어서는 기초자본금, 사업주이익 및 사업주의 부채합계액에서 미수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부채부분으로 계상되어 있는 이익유보성 예비금 및 준비금을 더한 액을 의미함.

9)「500만엔 이상의 자금조달능력」이란 담보로 해야할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500만엔 이상의 자금에 대해서 거래 금융기관의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융자증명서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함.

10)「결손액」이란 법인에 있어서는 당기말 처리손실이 법정준비금 및 임의적립금의 합계액을 상회하는 액을, 개인에 있어서는 사업주 손실이 부채액에서 미수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부채부분에 계상되어 있는 이익유보성 예비금 및 준비금을 더한 액을 의미함.

11)「유동비율」이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수치에 100을 곱한 수치.

12)「자본금」이란 법인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불입자본금, 유한회사의 자본의 총액, 합자회사 및 합명회사 등의 출자금액을, 개인에 있어서는 기초자본금을 의미함.

13) 일본「건설업법」제8조의 규정을 보면, 국토교통성 장관 혹은 도도부현 지사는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라도(허가의 갱신을 받으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호 또는 제7호부

2. 일본의 건설업 허가 실태

- 일본의 건설업 허가업자 수는 2014년 3월말 현재 47만 639개사로서, 피크(peak) 시점인 1999년과 비교하여 13만여 개사가 줄어들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 결과에 의하면, 국내의 건설업체 수는 12만 7,894개사로 나타난 바 있음. 이는 일본에 비하여

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또는 허가신청서나 그 첨부 서류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실의 기재가 빠져있을 때 허가를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一 성년피후견인(成年被後見人) 혹은 피보좌인(被保佐人) 또는 파산자로 복권을 얻을 수 없는 자

二 제2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일반 건설업의 허가나 특정 건설업의 허가를 취소당하고 그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三 제2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일반 건설업의 허가 또는 특정 건설업의 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에 관련된 행정절차법(1993년 법률 제88호)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던 날부터 해당 처분이 있던 날 또는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결정된 날까지의 사이에 제1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同 條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로, 해당 신청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四 前号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제1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同 條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前 号의 통지일 전 60일 이내에 해당 신고와 관련된 법인의 임원 혹은 정령에서 정하는 사용인이었던 자 또는 해당 신고와 관련된 개인의 정령에서 정하는 사용인이었던 자로 해당 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五 제28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 정지를 명령받거나 그 정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六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설업에 대해서 제29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고 그 금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七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또는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八 이 법률, 건설공사의 시공 혹은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사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서 정령으로 정해진 자 혹은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의 규정(동법 제32조의 2 제7항의 규정을 제외함)에 위반하거나, 또는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 제204조, 제206조, 제208조, 제208조의 3, 제222조 또는 제247조의 죄 혹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26년 법률 제60호)의 죄를 범함에 따라 벌금의 형에 처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또는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九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로 그 법정대리인이 前 各 号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十 법인으로, 그 임원이나 정령에서 정하는 사용인 중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 혹은 제6호에서 제8호까지의 어딘가에 해당하는 자(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자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취소당하기 이전부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자가 제12조 제5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同 條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되기 이전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자가 제29조의 4의 규정에 의해 영업을 금지당하기 이전부터, 건설업자인 해당 법인의 임원 혹은 정령에서 정하는 사용인이었던 자를 제외함)가 있는 자

十一 개인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사용인 중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서 제8호까지의 어딘가에 해당하는 자(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자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취소당한 이전부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자가 제12조 제5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同 條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자가 제29조의 4의 규정에 의해 영업을 금지 당하기 이전부터, 건설업자인 해당 개인의 정령에서 정하는 사용인이었던 자를 제외함)가 있는 자

27% 수준임.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업 종사자수는 109만 3,761명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이는 대략 일본의 1/5 수준임.

<그림 2-1> 일본의 건설투자 및 허가업체 수, 취업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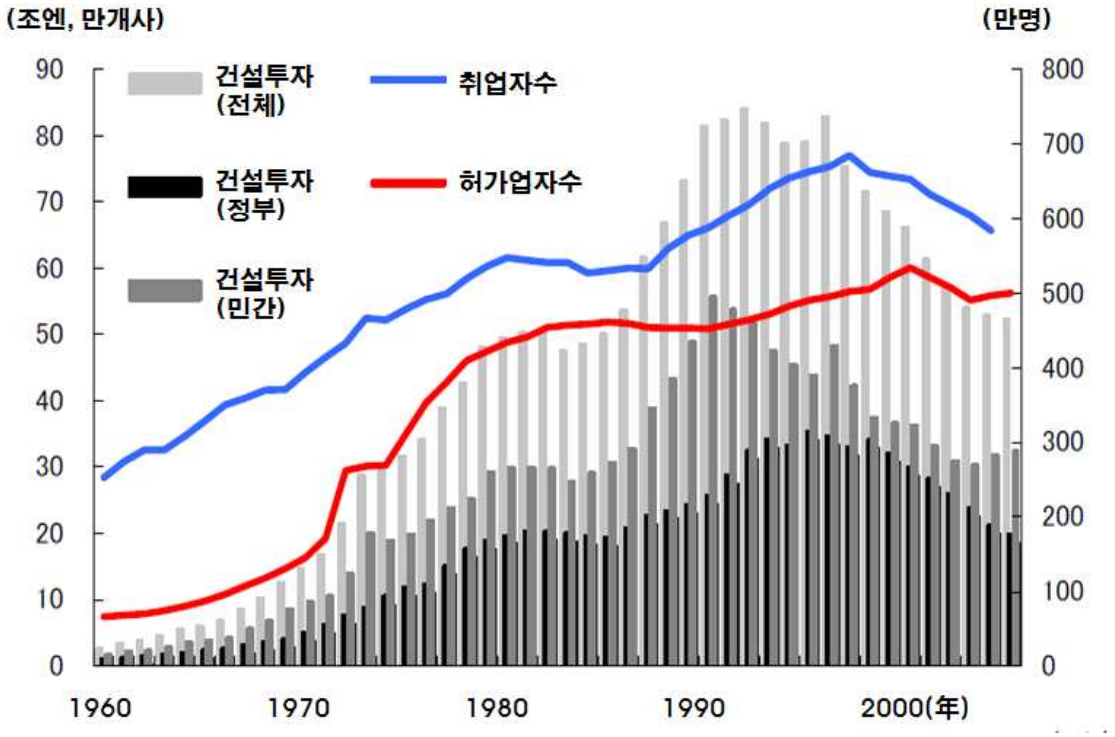

자료 : (財)建設經濟硏究所, 總務省(勞動力調査), 國土交通省(建設投資見通し).

- 일반건설업 허가를 취득한 자는 44만 9,671개사이고, 특정건설업 허가를 받은 자는 4만 3,061개사임.

・2개 이상의 도도부현에 영업소를 두기 위하여 국토교통대신의 허가를 받은 자는 9,811업자로서 전체의 2.1%이며, 1개 도도부현에 영업소를 개설한 지사 허가업자는 46만 828업자임.

<표 2-2> 일반건설업과 특정건설업 허가업체 수

(단위 : 개사)

구분	일반건설업			특정건설업			합계 (순계)
	국토교통 대신	지자체장	계	국토교통 대신	지자체장	계	
2000년	7,290	570,419	577,709	6,643	43,498	50,141	600,980
2005년	7,253	531,959	539,212	6,420	44,756	51,176	562,661
2010년	6,823	484,072	490,895	5,672	40,989	46,661	513,196
2014년	6,984	442,687	449,671	5,566	37,495	43,061	470,639

주 : 각년 3월 말 현재 기준임.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표 2-3> 일본 건설업 허가주체별 허가업체 수

(단위 : 개사, %)

구분	총계(A)	국토교통대신 허가(B)	지자체 허가	B / A
1990년	508,874	8,944	499,930	1.8
1995년	551,661	9,871	541,790	1.8
2000년	600,980	10,899	590,081	1.8
2005년	562,661	10,607	552,054	1.9
2010년	513,196	9,780	503,416	1.9
2014년	470,639	9,811	460,828	2.1

주 : 각년 3월 말 현재 기준임.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 건설업종별로 보면, 토목, 건축 등 28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1개 업종만을 허가받은 업자는 23만 4,477업자로서 전체의 49.8%임.

- 업종별로는 건축공사업이 16만 3,246개사로서 전체의 34.7%가 취득하고 있으며, 비계・토공사업이 15만 8,645업자로서 전체업자의 33.7%가 취득하고 있으며, 토목공사업은 13만 3,904업자로서 전체의 28.5%가 취득하고 있음.

<표 2-4> 일본의 건설업종별 허가업자 수 추이

(단위 : 개사, %)

업종	2000년(A)	2005년	2010년	2014년(B)	증가율(B/A)
토목	167,891	167,896	149,020	133,904	-20.2
건축	226,778	208,833	184,849	163,246	-28.0
목공사	64,368	65,555	66,463	66,630	3.5
미장	16,159	17,888	19,045	20,314	25.7
비계・토공	160,496	169,586	163,993	158,645	-1.2
석공사	47,476	56,347	58,218	59,239	24.8
지붕	27,458	31,839	35,467	38,989	42.0
전기	53,743	53,849	54,071	55,437	3.2
관	88,534	93,527	88,234	83,890	-5.2
타일・조적	27,919	31,164	34,006	37,136	33.0
강구조물	56,855	66,398	69,578	70,832	24.6
철근	9,960	11,900	13,612	15,183	52.4
포장	87,752	97,199	92,653	88,136	0.4
준설	33,700	42,226	43,629	43,915	30.3
판금	13,149	15,739	18,002	20,142	53.2
유리	8,980	11,249	13,312	15,404	71.5
도장	36,896	44,334	48,469	51,560	39.7
방수	14,977	19,655	23,327	26,540	77.2
내장마감	57,026	61,192	65,993	68,642	20.4
기계기구설치	18,050	18,762	19,714	20,546	13.8
열절연	6,794	9,141	11,309	13,675	101.3
전기통신	10,847	12,359	13,252	13,725	26.5
조경	35,033	35,966	30,796	27,133	-22.6
착정	3,414	3,284	2,899	2,594	-24.0
창호	20,673	22,314	23,613	24,845	20.2
수도시설	80,592	90,326	86,146	81,505	1.1
소방시설	16,013	15,827	15,239	14,942	-6.7
청소시설	806	739	592	499	-38.1
합계	1,392,339	1,475,094	1,445,501	1,417,248	1.8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그림 2-2> 건설업 허가자의 업종별 취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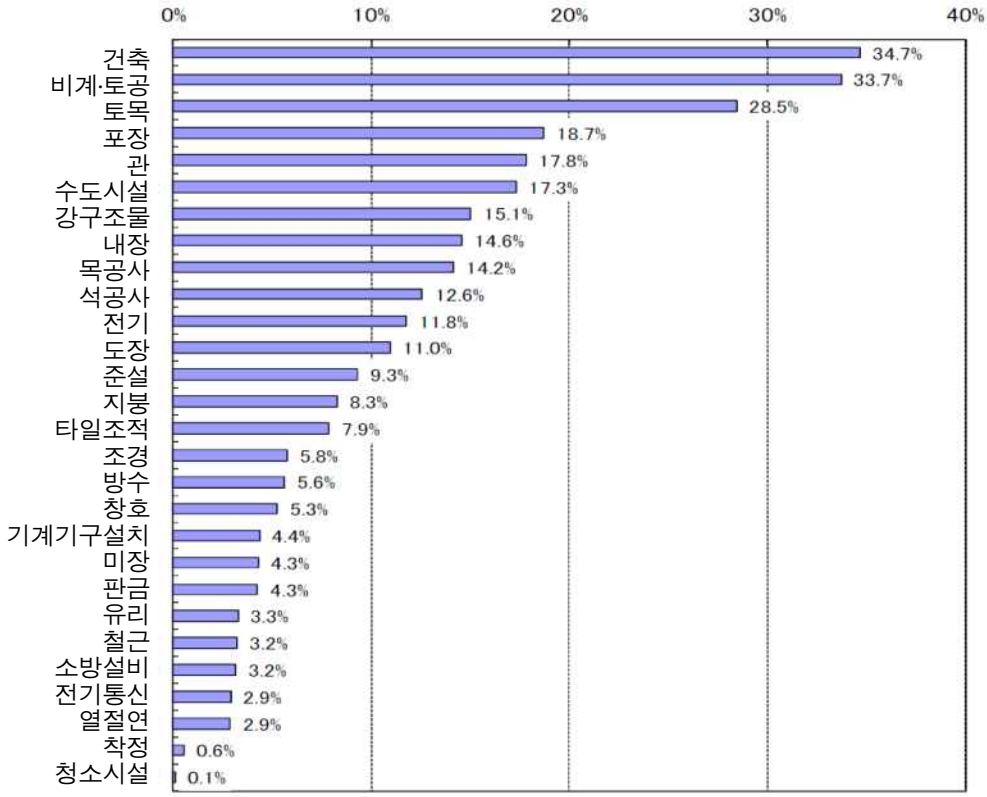

- 자본금 계층별로 살펴보면, 자본금 금액이 1,000만엔 이상 2,000만엔 미만의 법인이 23.9%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자본금 300만엔 이상 500만엔 미만의 법인이 23.5%, 개인 19.4% 순임.

- 개인 및 자본금이 3억엔 미만의 법인 수는 46만 7,880업자로서 전체 건설 허가업자 수의 99.4%를 차지하고 있음.

<표 2-5> 자본금 계층별 허가업자 수

(단위 : 개사, %)

자본금 계층별		허가업자 수	구성비	누계 구성비
개인		91,204	19.4	19.4
법인	자본금 200만엔 미만	8,972	1.9	21.3
	200만엔 이상 ~ 300만엔 미만	2,161	0.5	21.7
	300만엔 이상 ~ 500만엔 미만	110,632	23.5	45.3
	500만엔 이상 ~ 1000만엔 미만	68,393	14.5	59.8
	1000만엔 이상 ~ 2000만엔 미만	112,657	23.9	83.7
	2000만엔 이상 ~ 5000만엔 미만	59,770	12.7	96.4
	5000만엔 이상 ~ 1억엔 미만	11,296	2.4	98.8
	1억엔 이상 ~ 3억엔 미만	2,795	0.6	99.4
	3억엔 이상 ~ 10억엔 미만	1,406	0.3	99.7
	10억엔 이상 ~ 100억엔 미만	999	0.2	99.9
	100억엔 이상	354	0.1	100.0

자료 : 國土交通省 土地建設産業局 建設業課, 建設業許可業者數の調査結果について, 2014. 6.

- 건설업허가업자의 자본금 규모별로 보면, 1,000만엔 이상에서 5,000만엔 미만에 속하는 비중이 46.6%를 차지하여 주종을 이루고 있음.

- 건설업종별로 보면, 개인사업자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건축(24.0%), 목공(22.9%)임.

- 토목공사업에서 자본금 100억엔 이상의 허가업자 수는 149개사이며, 건축공사업은 223개사임.

- 청소시설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기계기구설치공사업 등은 전체 허가업자 수 가운데 10억엔 이상의 허가업자 수 비중이 높은 업종임.

<표 2-6> 건설업종별 자본금 계층별 허가업자 수

(단위 : 업자 수)

업종	개인	300만엔 미만	300만엔 이상 1000만엔 미만	1000만엔 이상 5000만엔 미만	5000만엔 이상 1억엔 미만	1억엔 이상 10억엔 미만	10억엔 이상 100억엔 미만	100억엔 이상	합계
토목	14,134	2,179	43,103	67,024	5,472	1,499	344	149	133,904
건축	39,228	2,676	47,872	64,733	5,825	2,157	532	223	163,246
목공사	15,238	1,362	20,929	25,073	2,692	1,035	219	82	66,630
미장	3,026	388	6,543	8,517	1,178	514	103	45	20,314
비계・토공	17,217	3,790	57,273	72,086	5,884	1,837	406	152	158,645
석공사	5,800	1,218	19,562	28,832	2,753	833	169	72	59,239
지붕	5,006	857	12,176	17,396	2,229	1,009	225	91	38,989
전기	6,646	1,203	20,327	23,031	2,196	1,398	447	189	55,437
관	8,665	1,494	29,247	39,153	3,297	1,494	388	152	83,890
타일・조적	4,352	873	11,477	16,893	2,172	1,011	249	109	37,136
강구조물	6,428	1,461	22,483	34,442	3,951	1,533	379	155	70,832
철근	1,813	346	4,496	6,830	1,101	466	86	45	15,183
포장	7,384	1,549	27,706	46,101	4,131	988	199	78	88,136
준설	4,100	903	13,516	22,306	2,361	568	108	53	43,915
판금	2,420	367	6,548	8,862	1,226	554	112	53	20,142
유리	1,014	299	4,274	7,989	1,148	530	102	48	15,404
도장	6,080	1,212	15,750	23,899	3,036	1,193	282	108	51,560
방수	2,082	642	8,099	12,802	1,836	835	167	77	26,540
내장마감	8,165	1,688	22,679	30,659	3,341	1,568	386	156	68,642
기계기구설치	631	291	5,261	11,157	1,617	1,072	366	151	20,546
열절연	1,157	313	4,125	6,487	972	476	102	43	13,675
전기통신	416	337	3,881	7,253	824	640	254	120	13,725
조경	3,474	303	7,103	14,125	1,432	514	124	58	27,133
착정	214	20	599	1,512	165	59	16	9	2,594
창호	2,563	455	7,312	12,018	1,549	727	157	64	24,845
수도시설	6,971	1,292	25,201	42,873	3,873	975	223	97	81,505
소방시설	855	166	3,798	8,704	800	426	141	52	14,942
청소시설	4	3	32	288	57	53	33	29	499
합계	175,083	27,687	451,372	661,045	67,118	25,964	6,319	2,660	1,417,248

자료 : 國土交通省 土地建設産業局 建設業課, 建設業許可業者數の調査結果について, 2014. 6.

<표 2-7> 건설업종별 자본금 계층별 허가업자 수 점유비

(단위 : %)

업종	개인	300만엔 미만	300만엔 이상 1,000만엔 미만	1000만엔 이상 5,000만엔 미만	5,000만엔 이상 1억엔 미만	1억엔 이상 10억엔 미만	10억엔 이상 100억엔 미만	100억엔 이상	합계
토목	10.6	1.6	32.2	50.1	4.1	1.1	0.3	0.1	100.0
건축	24.0	1.6	29.3	39.7	3.6	1.3	0.3	0.1	100.0
목공	22.9	2.0	31.4	37.6	4.0	1.6	0.3	0.1	100.0
미장	14.9	1.9	32.2	41.9	5.8	2.5	0.5	0.2	100.0
비계・토공	10.9	2.4	36.1	45.4	3.7	1.2	0.3	0.1	100.0
석공사	9.8	2.1	33.0	48.7	4.6	1.4	0.3	0.1	100.0
지붕	12.8	2.2	31.2	44.6	5.7	2.6	0.6	0.2	100.0
전기	12.0	2.2	36.7	41.5	4.0	2.5	0.8	0.3	100.0
관	10.3	1.8	34.9	46.7	3.9	1.8	0.5	0.2	100.0
타일・조적	11.7	2.4	30.9	45.5	5.8	2.7	0.7	0.3	100.0
강구조물	9.1	2.1	31.7	48.6	5.6	2.2	0.5	0.2	100.0
철근	11.9	2.3	29.6	45.0	7.3	3.1	0.6	0.3	100.0
포장	8.4	1.8	31.4	52.3	4.7	1.1	0.2	0.1	100.0
준설	9.3	2.1	30.8	50.8	5.4	1.3	0.2	0.1	100.0
판금	12.0	1.8	32.5	44.0	6.1	2.8	0.6	0.3	100.0
유리	6.6	1.9	27.7	51.9	7.5	3.4	0.7	0.3	100.0
도장	11.8	2.4	30.5	46.4	5.9	2.3	0.5	0.2	100.0
방수	7.8	2.4	30.5	48.2	6.9	3.1	0.6	0.3	100.0
내장마감	11.9	2.5	33.0	44.7	4.9	2.3	0.6	0.2	100.0
기계기구설치	3.1	1.4	25.6	54.3	7.9	5.2	1.8	0.7	100.0
열절연	8.5	2.3	30.2	47.4	7.1	3.5	0.7	0.3	100.0
전기통신	3.0	2.5	28.3	52.8	6.0	4.7	1.9	0.9	100.0
조경	12.8	1.1	26.2	52.1	5.3	1.9	0.5	0.2	100.0
착정	8.2	0.8	23.1	58.3	6.4	2.3	0.6	0.3	100.0
창호	10.3	1.8	29.4	48.4	6.2	2.9	0.6	0.3	100.0
수도시설	8.6	1.6	30.9	52.6	4.8	1.2	0.3	0.1	100.0
소방시설	5.7	1.1	25.4	58.3	5.4	2.9	0.9	0.3	100.0
청소시설	0.8	0.6	6.4	57.7	11.4	10.6	6.6	5.8	100.0
합계	12.4	2.0	31.8	46.6	4.7	1.8	0.4	0.2	100.0

3. 시사점

(1) 건설업 등록시 경영임원에 대한 검증

- 일본의 경우 건설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기술자 배치 및 자본금 요건 충족 이외에 대표자나 경영 임원이 최소 5년 이상의 건설업 경력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건설업 경력이 없는 자가 기술인력을 일시 임대하여 건설업 허가를 받은 후, 일괄하도급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함.

(2) 기술자격뿐만 아니라 해당 공사의 시공 경험 검증

- 일본의 경우, 건설업 허가를 위한 기술자 요건 가운데 단순히 기술자격증을 갖추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업종별로 해당 공사의 실무 경험을 검증하고 있음. 예를 들어 방수공사업을 등록할 경우, 등록된 기술자가 방수공사 시공 경험이 있는지, 혹은 방수공사 시공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함.

・건축이나 토목 일식 면허도 등록된 기술자가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종합적인 공사 관리를 경험해 본 인력인지를 검증함.

・이는 건설업 면허를 부여함에 있어 기술자의 해당 공사 현장 경력을 요구함으로써 직접시공 능력을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

・다만, 일본은 1인 기업이 가능하고, 우리나라는 기술자를 최소 5~6명 보유해야 하는 차이점이 존재함.

(3) 도급업자(contractor)로서 성실성 검증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대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므로 신의성실에 입각한 도덕성이 매우 중요함.

・일본의 경우, 법인이나 임원, 지점 또는 영업소 대표가 도급계약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를 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시사점이 존재함.

(4) 전기, 소방시설 공사 등을 건설업종으로 분류

-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건설업종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 전기공사업이나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건설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건설업종 분류 가운데 토건공사업이나 조경시설물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은 일본 건설업 면허 분류에는 없음.
  - 일본의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발주기관의 유자격자 명부 등록시 토목이나 건축 면허를 갖춘 자가 '시설물유지관리' 업무의 유자격자 명부에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임.

<표 2-8> 한국과 일본의 건설업 분류 체계 비교

한국	일본
토건(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토목 일식)
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건축 일식)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조경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내장 마감공사업
	목공사업
포장공사업	포장(鋪裝)공사업
토공사업	비계・토공・콘크리트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미장공사업
	방수공사업
	타일・벽돌・블록공사업
석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창호공사업
	유리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지붕공사업
	판금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기계기구설치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열절연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관(管)공사업
난방시공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수도설비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준설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착정공사업
	청소시설공사업

제3장 건설업종별 도급 범위 및 시공 자격

1. 건설업종별 도급 가능한 공사 유형

(1) 건설업종별 도급 가능한 공사 유형의 구체적 예시

- 일본에서는 건설업종별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하여 업종 간 업무범위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고 있음.

・예를 들어 토목공사업의 업무 예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청에서 시공 업역을 중복 규제하고 있는 치산(治山)공사, 임도(林道)공사가 건설공사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토공사업의 업무 범위에서는 운동시설 정비공사, 테니스코트 표면공사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계기구설치업의 업무 범위에 놀이시설 설치, 무대장치 설치, 사일로 설치, 입체 주차장 설비공사 등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청소시설업에서는 쓰레기처리시설공사, 분뇨처리시설공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경공사업에서는 식재공사, 잔디 등 지피(地被)공사, 공원 설비공사, 원로(정원길이나 공원길)공사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건설 시공 업역과 관련된 분쟁 요소를 사전에 제어하고 있음.

<표 3-1> 일본의 건설업종 분류 체계

업종	정의 및 범위	예시
토목공사업 (토목일식)	종합적인 기획, 지도, 조정에 의해 도로, 하천, 수로(水路), 기타의 토목 공작물을 건설하는 공사	댐, 하천, 터널 본체, 교량, 도로 축조, 토지 구획 정비공사, 토지 조성, 도로 하부 등의 상하수도관 매설, 실드공사, 뉴머틱케이슨공사, 치산(治山)공사, 임도(林道)공사
건축공사업 (건축일식)	종합적인 기획, 지도, 조정을 통해 건축물을 건설하는 공사.	건축 확인을 필요로 하는 신축공사, 증축공사, 개축공사 등
목공사업	목재 가공 또는 설치에 의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공작물에 목제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목공사, 거푸집공사, 조작(造作)공사, 목제난간 설치, 목조 건축물의 보수공사
미장공사업	공작물에 벽토, 모르타르, 회반죽, 석고 등을 흙손으로 바르거나 분무하거나 붙이는 공사	미장공사, 모르타르공사, 모르타르 방수공사, 뿜칠공사(건축물), 갈아내기, 씻어내기공사
비계・토공사업	비계 조립, 중량물 운반 배치, 공작물의 해체, 파일 항타, 콘크리트에 의한 공작물을 축조하는 공사, 기타 기초적 내지 준비적 공사	비계공사, 발판 가설, 백네트 설치, 해체공사, 천공공사, 파일항타공사, 널말뚝(흙막이)공사, 토공사, 굴착공사, 근절(根切)공사, 발파공사, 성토공사, 콘크리트공사, 굴삭공사, 지반 개량, 웰포인트공사, 볼링그라우트, 사석공사, 법면 처리, 사태 방지공사, 종자 식재공사, 주차장 포장, 운동시설 정비공사, 테니스 코트 표면공사, 가드레일 설치, 도로 표지공사, 도로 방음벽공사, 외구공사, 네트펜스공사, 비닐하우스 축조, 소규모 조성공사, 전신주의 지중화공사, 빗물받이공사
석공사업	석재(석재와 유사한 콘크리트 블록 및 가공된 돌을 포함)의 가공 또는 쌓기에 의해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공작물에 석재를 설치하는 공사	돌쌓기(붙임)공사, 콘크리트 블록 쌓기(붙임)공사, 석재 가공공사
지붕공사업	기와, 슬레이트, 금속 박판 등에 의해 지붕을 이는 공사	기와 지붕공사, 슬레이트 지붕공사, 금속 박판 지붕공사, 지붕 단열공사
전기공사업	발전 설비, 변전 설비, 송배전선공사, 구내 전기 설비 등을 설치하는 공사	발전 설비공사, 송배전선공사, 인입선공사, 변전 설비공사, 구내 전기 설비(비상 전기 설비를 포함)공사, 조명 설비공사, 전차선공사, 교통 신호 설비공사, 네온 장치공사, 피뢰침공사, 전기 방식(防食)공사, 콘센트공사, 계측장치공사
관(管)공사업	냉난방, 공기조화, 급배수, 위생 등을 위한 설비를 설치, 또는 금속제 등의 관을 사용해서 물, 기름, 가스, 수증기 등을 송배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난방 설비공사, 냉동냉장 시설공사, 공기조화 설비, 위생・급탕 설비, 주방설비, 위생 설비, 정화조공사, 수세식 화장실 설비, 가스관 배관공사, 덕트공사, 관내 갱생공사, 태양열 시스템공사
타일・벽돌・블록 공사업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에 의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공작물에 벽돌, 콘크리트 블록, 타일 등을 장착, 또는 붙이는 공사	콘크리트 블록 쌓기(붙임)공사, 벽돌 쌓기(붙임)공사, 타일 붙임공사, 축로공사, 석면슬레이트 붙임, ALC공사
강구조물공사업	형강, 강판 등 강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의한 공작물을 축조하는 공사	철골공사, 백네트 가공 조립, 피난 계단 설치, 교량공사, 강철 록세이드공사, 철탑공사, 강제 수조공사, 석유・가스 등의 저장용 탱크 설치, 옥외 광고공사, 갑문 및 수문 등의 설치
철근공사업	봉강 등의 강재를 가공, 접합하거나 조립하는 공사	철근 가공 조립공사, 가스 압접공사

업종	정의 및 범위	예시
포장(鋪裝) 공사업	도로 등의 지반면을 아스팔트, 콘크리트, 모래, 자갈, 쇄석 등에 의한 다른 포장하는 공사	아스팔트 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공사, 블록 포장공사, 노반 축조공사
준설공사업	하천, 항만 등의 바닥을 준설하는 공사	준설공사
판금공사업	금속 박판 등을 가공해 공작물에 장착, 또는 공작물에 금속제 등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공사	판금 가공 설치, 건축 판금공사
유리공사업	공작물에 유리를 가공하여 설치하는 공사	유리 가공 설치
도장공사업	도료, 칠 재료 등을 공작물에 분무, 도장, 또는 붙이는 공사	도장공사, 용사(溶射), 라이닝, 강구조물 도장, 노면 표시공사
방수공사업	아스팔트, 모르타르, 실링재 등에 의해 방수를 하는 공사(※건축 계열의 방수만)	아스팔트 방수, 모르타르 방수, 실링공사, 도막 방수, 시트 방수, 주입 방수
내장마감 공사업	목재, 석고보드, 흡음판, 벽지, 다다미, 비닐 바닥 타일, 카펫 등을 이용해 건축물의 내장 마무리를 하는 공사	인테리어공사, 천정 마감공사, 벽장식공사, 내장 칸막이, 바닥 마감, 다다미공사, 가구공사, 방음공사
기계기구 설치공사업	기계기구의 조립 등에 의해 공작물을 건설하거나 공작물에 기계 기구를 설치하는 공사(※ 조립 등을 요하는 기계기구의 설치공사만)	플랜트 설비공사, 운반기기 설치, 내연력 발전설비공사(가스터빈 등), 집진기 설치, 터널·지하도 등의 급배수기기 설치, 댐용 임시설비, 놀이시설 설치, 무대장치 설치, 사일로 설치, 입체 주차장 설비공사
열절연 공사업	공작물 또는 공작물의 설비를 열절연하는 공사	냉난방 설비, 냉동 냉장 시설, 동력 설비 또는 연료 공업, 화학 공업 등의 설비 열절연 공사
전기통신 공사업	유선 전기통신설비, 무선 전기통신설비, 방송기기설비, 데이터 통신설비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전기통신 선로설비공사, 전기통신기계 설치공사, 방송기계 설치공사, 안테나 설비공사, 데이터 통신 설비공사, 정보제어 설비공사, TV전파장애 방제 설비공사
조경공사업	정지, 수목의 식재, 조경석의 설치 등에 의한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원지를 축조하거나 도로, 건축물의 옥상 등을 녹화하거나 식생을 복원하는 공사	식재공사, 잔디 등 지피(地被)공사, 조경석공사, 부지 정지(整地), 공원 설비공사, 광장공사, 원로(정원길이나 공원길)공사, 수경공사, 옥상 등 녹화
착정공사업	착정 기계 등을 이용해 천공, 착정을 하는 공사 또는 이들 공사에 따른 양수설비 설치 등을 하는 공사	우물공사, 관측우물공사, 환원우물공사, 온천 굴착, 우물 축조, 천공공사, 석유 굴착, 천연가스 굴착, 양수 설비공사
창호공사업	공작물에 목제 또는 금속제의 창호 등을 설치하는 공사	금속제 창호 설치, 새시 부착, 금속제 커튼월 설치, 셔터 설치, 자동 도어 설치, 목제 창호 설치
수도설비 공사업	상수도, 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취수, 정수, 배수 등의 시설을 축조하는 공사 또는 공공하수도 혹은 유역 하수도의 처리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취수 시설, 정수 시설, 배수 시설, 하수 처리 설비공사
소방시설 공사업	화재경보 설비, 소화 설비, 피난 설비 혹은 소화 활동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공작물에 설치하는 공사	옥내 소화전 설치, 스프링클러 설치, 물이나 거품, 불연성 가스, 증발성 액체 또는 분말에 의한 소화설비공사, 옥외 소화전 설치공사, 동력소방펌프 설치, 화재경보 설비, 누전 화재경보기 설치, 비상경보 설비공사, 금속제 피난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또는 배연 설비의 설치공사
청소시설 공사업	분뇨 처리시설이나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쓰레기 처리 시설공사, 분뇨처리시설공사

⑵ 건설업종별 도급 범위의 구분 사례

- 일본 국토교통성의 '건설업허가 사무 가이드라인'에서는 건설업 허가 업종 가운데 유사한 건설공사의 도급 자격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상하수도 관련 시설공사

- 상하수도시설공사에서 『토목일식공사』, 『관공사』 및 『수도시설공사』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즉, 공공 도로 아래 등의 하수도배관공사 및 하수처리장 자체의 부지조성공사는 『토목일식공사』이고, 주택이나 기타시설 부지내의 배관공사 및 상수도 등의 소형 배수관을 설치하는 작업은 『관공사』임.
  - 상수도 등의 취수, 정수, 배수 등의 시설 및 하수처리장 내의 처리 설비를 축조·설치하는 작업은 『수도시설공사』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농업용수도 관개용 배수시설 등 건설공사는 『수도시설공사』가 아니라 『토목일식공사』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2) 비상계단 설치공사

- 건물 외벽에 고정된 비상계단을 설치하는 공사는 『소방시설공사』이 아니라 건축물의 구체 일부 공사로서 『건축일식공사』 또는 『강구조물공사』에 해당된다고 명시함.

- 또, "금속제 피난 사다리"는 화재시 등에만 사용하는 조립식의 사다리이며, 건물 외벽에 고정된 비상계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 따라서 고정된 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공사는 『소방시설공사』가 아니라 건축물의 구체 일부 공사로 『건축일식공사』 또는 『강구조물공사』로 구분하고 있음.

3) 미장, 방수, 도장 공사

- 방수모르타르를 이용한 방수공사는 미장공사업이나 방수공사업 가운데 어느 업종의 허가를 가지고도 시공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미장공사』에서 "뿜칠공사"는 건축물에 대해 모르타르 등을 뿜칠하는 공사를 말하며, 『비계·토공·콘크리트공사』에서 "뿜칠공사"는 "모르타르뿜칠공사" 및 "종자 분무공사"를 총칭한 것으로서, 경사면 처리 등 때문에 모르타르 또는 종자를 분무하는 공사로서 구분하고 있음.

- 라스쌓기공사 및 건식벽공사는 통상 미장공사를 할 때의 준비 작업으로서 당연히 포함시키고 있음. 또한, 바탕조정공사 및 블라스트(blast)공사는 통상 도장공사를 할 때의 준비 작업으로서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방수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이른바 건축 계열의 방수공사뿐이며, 터널방수공사 등 토목계의 방수공사는 『방수공사』가 아니라 『비계·토공·콘크리트공사』로 구분하고 있음. 단, 방수 모르타르를 이용한 방수공사는 미장공사업, 방수공사업 어느 업종의 허가를 가지고도 시행이 가능함.

4) 비계·토공·콘크리트공사, 철근공사, 포장공사

- 『비계·토공·콘크리트공사』의 "철골조립공사"와 『강구조물공사』의 "철골공사"의 구분은 철골 제작, 가공에서 조립까지를 일괄해서 도급받는 것이 『강구조물공사』의 "철골공사"이며, 이미 가공된 철골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작업만을 도급받는 것은 『비계·토공·콘크리트공사』의 "철골조립공사"로 구별하고 있음.

- 또, 『비계·토공·콘크리트공사』의 "옥외광고물 설치공사"과 『강구조물공사』의 "옥외광고공사"의 구분은 현장에서 옥외광고물 제작, 가공으로부터 설치까지 일괄적으로 도급하는 것이 『강구조물공사』의 "옥외광고공사"이며, 그 이외의 공사는 『비계·토공·콘크리트공사』의 "옥외광고물 설치공사"로 구별하고 있음.

- 포장공사와 함께 시공되는 경우가 많은 가드레일 설치공사는 공사 종류로 볼 때 『포장공사』 가 아니라 『비계・토공・콘크리트공사』에 해당한다고 명시함.

5) 관공사, 수도시설공사, 청소시설공사 등

- “냉난방설비공사”, “냉동냉장시설공사”, “공기조화설비공사”에는 냉매배관공사 등 염화불화탄소의 누출을 방지하는 공사가 포함된다고 명시함. 분뇨처리시설 건설공사에서 『관공사』, 『수도시설공사』 및 『청소시설공사』 간의 구분은 규모와 관계없이 정화조(합병처리조를 포함)에 의해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공사는 『관공사』에 해당하고, 공공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하수도에서 수집한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공사는 『수도시설공사』에 해당하며, 공공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흡입방식으로 수집된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공사는 『청소시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음.

- 건축물 안에 설치되는 통상의 공기조화기기의 설치공사는 『관공사』에 해당하며, 터널, 지하도 등의 급배기용으로 설치되는 기계기구공사는 『기계기구 설치공사』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리고 공해방지시설을 단체로 설치하는 공사는 『청소시설공사』가 아니라 각각의 공해방지시설별로 구분하는데, 예를 들면 배수처리설비이면 『관공사』, 집진설비이면 『기계기구 설치공사』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6) 타일・벽돌・블록공사, 석공사

- 기초압밀블록, 호안(護岸)블록의 설치 등 토목공사에서 규모가 큰 콘크리트블록을 설치하는 공사, 프리캐스트콘크리트 기둥, 보 등 부재설치공사 등은 『비계・토공・콘크리트공사』의 “블록설치공사”로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건축물의 내외장으로 인조석 등을 붙이는 공사나 법면 처리, 또는 옹벽으로서 콘크리트블록을 쌓거나 붙이는 공사 등은 『석공사』의 "콘크리트블록쌓기공사"로 규정하고 있음.

- 콘크리트블록에 의해 건축물을 짓는 공사 등은 『타일·벽돌·블록공사』의 "콘크리트블록쌓기공사"이며, 외장 공사로서 이를 할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7) 지붕, 판금, 내장 마감공사

- "기와", "슬레이트" 및 "금속박판"은 지붕을 잇는 재료의 구별을 나타낸 것이며, 이들 재료 이외의 지붕이음공사도 많아 이들을 포괄하여 "지붕이음공사"로 함. 따라서 판금지붕공사도 『판금공사』가 아니라 『지붕공사』에 해당한다고 명시함.

- 지붕단열공사는 단열 처리한 재료에 의해 지붕을 잇는 공사이고 "지붕이음공사"의 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또, 지붕일체형 태양광패널 설치공사도 『지붕공사』로 구분하고 있으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에 해당하며, 태양광패널을 지붕에 설치할 경우에는 지붕 등의 물끊기(止水) 처리를 하는 공사가 포함됨.

- "방음공사"는 건축물에서의 통상의 방음공사이며, 연주홀 등에서 구조적으로 음향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8) 기계기구 설치공사, 정보통신공사

- 『기계기구설치공사』에는 넓은 모든 기계기구류의 설치에 관한 공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기계기구의 종류에 따라서는 『전기공사』, 『관공사』, 『전기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과 중복될 것도 있음. 그러나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기공사』 등 각각의 전문공사로 구분하며, 이들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기계기구 혹은 복합적인 기계기구의 설치가 『기계기구설치공사』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급배기 기기 설치공사”는 터널, 지하도 등의 급배기용으로 설치되는 기계기구에 관한 공사이며, 건축물 안에 설치되는 공기조화설비의 설치공사는 『기계기구설치공사』가 아니라 『관공사』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2. 부대공사의 정의 및 유형

- 일본의 「건설업법」 규정을 보면, 건설업자는 허가를 받은 건설업에 관련된 건설공사 이외에 해당 건설공사에 부대하는 다른 건설업에 관련된 건설공사(이를 ‘부대공사’라 함)도 도급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부대공사’란 a) 주요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 필요가 생긴 다른 종의 건설공사 또는 b) 주요 건설공사의 시공에 따라 필요가 생긴 다른 종의 건설공사로서, 그 자체가 독립적인 사용 목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부대공사의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건설공사 주문자의 편리,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관행 등을 기준으로 해당 건설공사의 준비, 실시, 마무리 등에 해당하는 일련 또는 일체의 공사로 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건설업법」에서는 ‘부대공사’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예시들을 들고 있음.[14]

a) 주요 건설공사의 시공에 따라 필요가 생긴 다른 종의 건설공사의 예
- 관(管)공사 시행에 따라 필요가 생긴 열절연공사
- 지붕공사의 시공에 따라 필요가 생긴 도장공사 등

b) 주요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때문에 생긴 다른 종의 건설공사의 예
- 건축물의 개수 등의 경우, 전기공사 시공에 따라 필요가 생긴 내장 마무리 공사
- 창호공사의 시공에 따라 필요가 생긴 미장공사 등

14) 建設業許可事務ガイドラインについて(平成13 年 4 月 3 日國總建第97号 總合政策局建設業課長から地方整備局建政部長等あて) 最終改正 平成27 年1 月30 日國土建第246号 참조.

- 부대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법」 제4조에서 허가를 받은 건설업종 이외의 건설업에 관련된 건설공사도 허가를 받은 건설업종에 부대하는 공사라면 도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3. 복합공사(일식공사 및 부대공사)의 시공 자격

-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위해서는 각 세부공종별로 해당공종의 건설업 허가가 필요하지만, 부대공사 및 일식(一式)공사의 경우, 해당 전문업종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해당 기술자만 갖추면 해당 공종의 직접시공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인정되고 있음.

(1) 부대공사(附帶工事)의 경우

- 건설업 영위를 허가받은 건설업자는 허가된 업종 외에 그 공사와 관련된 부차적인 다른 종류의 건설공사를 한꺼번에 수주하는 것이 가능함(「건설업법」 제4조).
  - 이 때, 부대되는 공종의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그 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던지, 혹은 그 업종과 관련된 기술자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만 직접 시공이 가능함(「건설업법」 제26조의 2, 제2항).

(2) 일식공사(一式工事)의 경우

- 토목일식공사 및 건축일식공사는 다른 26개의 전문공사와 달리, 종합적인 기획, 지도, 조정 하에 토목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건설하는 공사이고, 2개 이상의 전문공사를 유기적으로 조화시켜 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임.

-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자가 일식공사를 수주할 경우, 하도급을 주거나 혹은 직접 시공하는 방법이 있음.
  -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할 경우 해당 전문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함(「건설업법」 제26조의 2, 제1항).

・직접 시공할 경우 부대공사의 경우와 같이 그 공사에 필요한 기술자를 두고 시공해야 함(「건설업법」 제26조의 2, 제1항).

- 구체적으로 「건설업법」 제26조의 2 규정을 보면,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을 하는 자는 토목일식공사(土木一式工事) 또는 건축일식공사(建築一式工事)를 시공하는 경우에 있어 토목일식공사 또는 건축일식공사 이외의 건설공사[15]를 시공할 때는 해당 건설공사 면허 취득을 위한 기술자 자격[16]에 해당하는 자로 시공기술상의 관리를 감독하는 자를 두고, 스스로 시공하는 경우 이외에는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도급 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또한, 부대공사로 발주되는 복합공종의 공사도 마찬가지인데, 건설업자는 허가를 받은 업종에 부대하는 다른 건설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면허 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자를 두고, 스스로 시공하는 경우 이외에는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도급 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전문기술자의 배치 측면에서 보면, 토목공사업자나 건축공사업자(원도급업체)가 토목일식공사 또는 건축일식공사를 시공할 경우, 이들 일식공사 중에 다른 전문공사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전문공사에 대해서 주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공사 현장에 둬야 함. 이 때문에 토목일식공사 또는 건축일식공사를 수주하고, 그 안에서 아울러 전문공사도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 가운데 하나를 취해야 함.[17]

・① 일식(一式)공사의 기술자가 그 전문공사에 대해 주임기술자 자격증도 갖고 있는

---

15) 「건설업법」 제3조 제1항의 단서의 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함.

16) 「건설업법」 제7조 제2호 イ, ロ 또는 ハ규정으로서, 다음과 같음.
イ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설업과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해 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에 따른 고등학교(구중등학교령(1943년 칙령 제36호)에 따른 실무학교를 포함. 이하 동일) 혹은 중등교육학교를 졸업한 후 5년 이상, 또는 동법에 따른 대학(구대학령(1918년 칙령 제388호)에 따른 대학을 포함. 이하 동일) 또는 고등전문학교(구전문학교령(1903년 칙령 제61호)에 따른 전문학교를 포함. 이하 동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실무 경험을 가진 자로 재학 중에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학과를 이수한 자.
ロ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설업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해 10년 이상 실무 경험을 가진 자
ハ 국토교통성 장관이 イ 또는 ロ에서 말한 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식 및 기술 또는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한 자

17) 日本 山口縣廳, Q&A 建設業法に基づく適正な施工体制について, 2007 참조.

경우, 그 자가 전문기술자를 겸함.

- ② 일식공사의 기술자 이외에 같은 회사 안에서 또는 밖에서 그 전문 공사에 대해 주임기술자 자격을 갖고 있는 자을 전문기술자로서 별도로 배치함.
- ③ 그 전문공사에 대해서 건설업 허가를 받는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함.

4. 시사점

(1) 건설업종별 도급 자격의 명확화

- 일본에서는 건설업종별로 구체화된 업무를 명시하여 건설업종 간 분쟁을 방지하고 있음. 또한, 일본 국토교통성의 '건설업허가사무 가이드라인'에서는 도급자격이 명확치 않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도급자격이 있는 해당 업종을 명시하고 있음.
- 임도(林道)나 사방(砂防)시설 등의 산림토목공사, 운동장시설공사, 놀이시설 설치공사 등도 건설업종의 법적 범위에 명확히 규정하여 유사 건설업종의 등장을 방지하고 있음.

(2) '부대공사' 규정의 적용 범위

- 일본에서는 '부대공사'란 a) 주요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 필요가 생긴 다른 종의 건설공사 또는 b) 주요 건설공사의 시공에 따라 필요가 생긴 다른 종의 건설공사로서, 그 자체가 독립적인 사용 목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위와 같은 부대공사 조항 이외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18] 제2항에서 복합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등).
①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②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③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 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공사 예정금액이 전체 공사 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까지 부대공사로 확대 해석하여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를 보면,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복합공사에 한하여 해당 전문 공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3) 복합공사의 시공권

- 일본에서는 복합 공종의 공사로 발주된 건설공사는 일식공사로서 건축이나 토목건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주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발주자의 판단에 의거하여 부대공사 규정을 적용하여 발주할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면허자가 원도급하는 것이 가능함.

- 개별 공종의 시공은 개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가 시공해야 하며, 하도급할 경우에도 개별 공종의 면허자에게 하도급해야 함.

- 다만, 일식공사와 부대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원도급자가 개별 세부 공종의 면허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자를 갖추었을 경우에는 직접시공이 가능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면허를 갖춘 자에게 하도급 시공하여야 함.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제 4장 발주기관 등록 및 경영사항 심사

1. 발주기관 입찰참가자격 심사 및 등록

(1) 공시 사례

- 일본의 발주기관에서는 통상 2년마다 건설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경영사항 심사 결과와 자체적인 주관적 심사를 통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고 유자격자 명부에 등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다음과 같이 입찰참가 자격에 관하여 공시를 함.

> 경쟁참가 자격에 관한 공시
>
> ○○년도의 국고교통성의 건설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일반경쟁(지명경쟁) 참가자격(국토교통성대신 관방관청 영선부, 국토교통성 지방정비 및 국토교통성 북해도개발국 제외)를 얻고자 하는 자의 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
> ○○년 ○월 ○일
>
> 국토교통성대신 관방회계과장 ○○○○

(2) 업종 구분 및 발주 공사의 종류

- (1) 토목공사업, (2) 건축공사업, (3) 전기공사업, (4) 관공사업, (5) 철강구조물공사업, (6) 포장공사업, (7) 도장공사업, (8) 방수공사업, (9) 내장마감공사업, (10) 기계기구설치공사업, (11) 전기통신공사업, (12) 조원공사업, (13) 수도시설공사업, (14) 소방시설공사업, (15) 청소시설공사업

- 공사의 종류에 관해서는 「건설업법」 제2조 별표 제1에 따라서 구분함.

(3) 신청 시기 및 서류

- 정기 신청 시기와 수시 신청 시기를 정하고 있으며, 정기 신청은 방문, 우편, 인터넷이 모두 가능함.

- 신청서 및 첨부 서류(건설공사의 경우)는 다음과 같음.

・신청서
・업태조서
・영업소 일람표
・종합평정 피통지서 사본
・「국세통측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신청자가 공동기업체 등인 경우에는 건설공동기업체 협정서 사본 및 공동기업체 등의 조서
・신청자가 합병신설회사 또는 합병존속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룹 경영사항심사 및 특수 경영사항심사 결과에 기초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 및 기업집단에 속한 건설업자에 관한 수치인정서
・행정서사 등의 대리 신청에 따른 경우에는 위임장

(4) 참가 자격 및 심사

- 경쟁에 참가할 수 없는 자

・예산결산 및 회계령(소화22년 칙령 제165호) 제7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예산결산 및 회계령 제71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중, 그 사실이 인지된 이후 2년 이상이 경과되지 않은 자
・경영 상황이 현저하게 불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건설공사 등에 관하여 법률상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중요한 사항 및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기재하지 않은 자

- 참가 자격 및 심사 방법

· 경쟁에 참여하는 자의 자격심사는 항목마다 점수를 산정하여 합계 점수로 함.

· 경쟁에 참가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합격 점수에 근거하여 별도 구분에 기초하여 부여함.

· 참가자격 심사 결과는 자격결정통지서에 따라서 통지함.

<그림 4-1> 공공공사 경쟁참여자격 심사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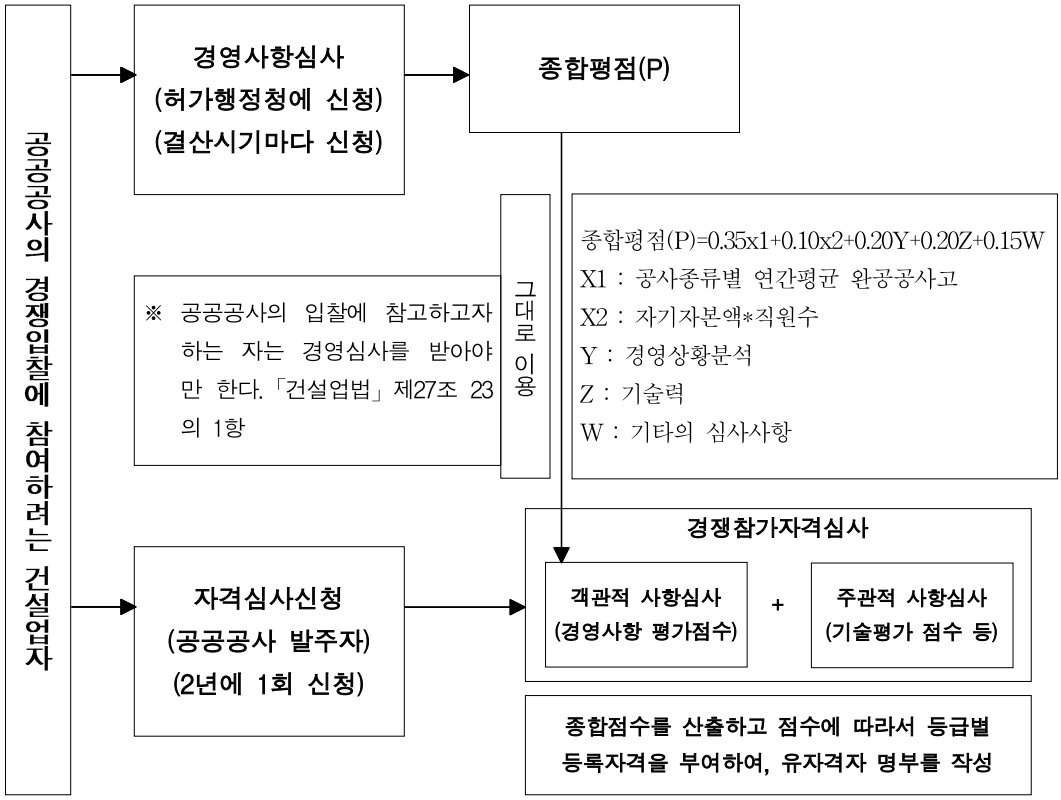

2. ‘경영사항심사’ 제도

(1) 경영사항 심사는 공공공사 입찰 참가의 필수 사항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직접 원도급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경영사항 심사’를 받아야 하며,[19] 경영사항 심사 결과는 일반경쟁 입찰에서 경쟁참가자격 심사나 지명경쟁 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 부여 등에 활용됨.[20]

・경영사항 심사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이나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입찰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건설업자의 경영상태 및 시공능력에 대한 객관적 사항[21]을 심사하는 것임.

(2) 심사 신청 및 심사 기관

- 경영사항 심사는 건설업 허가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대신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함.

・단, 건설업 허가 신청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대신 허가를 받은 자의 심사 신청 창구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지방자치단체임.

・심사 항목 중 경영사항의 심사는 경영사항 분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財)건설업정보관리센터로 신청해야 함.

(3) 심사 기준일 및 유효 기간

- 경영사항심사의 기준일은 경영사항 심사 신청일 직전 영업 연도 종료일이며, 유효기간은 심사 기준일로부터 1년 7개월이 경과한 날임.[22]

---

19) 「건설업법」 제27조의 23 제1항.

20) “공공사업의 입찰・계약절차의 개선에 관한 행동계획Ⅱ” 참조.

21) 여기서 객관적 사항이란 어느 발주자가 심사를 하더라도 동일한 심사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심사항목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완성공사고, 기술자수 등을 들 수 있음.

22) 「건설업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1호.

- 공공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자는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유효한 경영사항 심사 결과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경영사항 심사를 신청해야 함.

・발주자의 유자격업자 등록은 유효기간이 2년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지만, 공공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이와 관계없이 유효한 경영사항 심사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됨.

(4) 심사 항목 및 방법

- 경영사항 심사 방법을 보면, 각 건설업체의 기업 규모, 경영 상태, 기술력, 사회성 등의 심사 항목별로 평점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 평점을 산출하여 평가함.

-「건설업법」제27조의 23, 제3항의 경영사항 심사 항목 및 기준을 정하는 건(1994. 6. 8 건설성 고시 제1461호)에서 심사 항목 및 심사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경영사항심사의 사무취급에 대해」(1998. 6. 8 건설성 경건발 제192호)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 항목별 평가 점수 및 종합 평점이 산출되고 있음.

- 외국 건설업자의 평가

・외국의 건설업자[23]가 경영사항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거하여 별도의 절차가 존재함.[24]

・평가에 있어서는 일본 국외의 기술자 및 영업년수도 평가 대상이 되며, 외국 건설업체가 속한 기업 집단이 일체라는 증명이 있는 경우 그 기업 집단으로서의 수치를 평가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또 이러한 평가를 외국 기업이 요구할 때는 국토교통대신의 인정을 받아야 함.

---

23) 여기서 외국의 건설업자란 동 협정 적용국에 주된 영업소를 가진 건설업자 또는 동 협정 적용국에 주된 영업소를 가진 건설업자가 50% 이상 출자한 일본건설업자를 말함.

24) 고시부칙二,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 절차의 개선에 관한 행동계획 三, 협정 제8조(b) 참조.

- 심사 결과의 공표

· 경영사항 심사 결과는 종합 평정점수와 더불어 완성공사고 등 심사 항목별 평가점수가 공표되고 있음.

· (財)건설업정보관리센터에서 심사결과통지서의 열람 및 사본을 제공하며, 인터넷 열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표 4-1> 경영사항 심사 항목 및 기준

항목 구분	심사 항목		항목 구분의 점수	가중치
① 경영 규모 (X_1 , X_2)	완성공사고(完成工事高) (업종별)		X_1 점수 최고점 2,309 최저점 397	0.25
	· 자기자본액 · 利拂前 稅引前 償却前 利益 = 영업이익 +감가상각비		X_2 점수 최고점 2,280 최저점 454	0.15
② 경영 상황 (Y)	① 부채 저항력	· 純支拂利息比率 · 負債回轉期間	Y 점수 최고점 1,595 최저점 0	0.20
	② 수익성	· 總資本賣上總利益率 · 賣上高營業利益率		
	③ 재무건전성	· 自己資本比率 · 自己資本 대 固定資産比率		
	④ 절대적 역량	· 영업현금흐름 · 利益剩餘金		
③ 기술력 (Z)	· 기술직원 수 (업종별) · 원도급 완성工事高 (업종별)		Z 점수 최고점 2,441 최저점 456	0.25
④ 기타 심사 항목 (사회성 등) (W)	· 노동복지의 상황 · 건설업의 영업 계속의 상황 · 방재협정 체결의 유무 · 법령 준수의 상황 · 건설업의 경리에 관한 상황 · 연구개발의 상황 · 건설기계의 보유 상황 ·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규격에 의한 등록 상황		W 점수 최고점 987 최저점 0	0.15
종합 평점 (P)	$= 0.25X_1 + 0.15X_2 + 0.20Y + 0.25Z + 0.15W$			

주 : 1. 평가 항목 및 가중치는 2012년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임.
2. 허가업종별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을 부여하는데, 업종마다 수치가 틀린 심사항목은 회색 부분이며, 그 외 항목은 업종에 관계없이 공통의 점수가 됨.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3. 시사점

- 일본의 경우, 건설업 허가와는 별도로 발주기관별로 2년마다 건설업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하여 등록 자격을 부여하고, 유자격자명부를 작성하여 공공공사 입찰에서 활용하고 있음.
  -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면 단순히 건설업 허가증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며, 시공능력이나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경영사항 심사'를 통하여 평가점수를 받고, 이를 토대로 발주기관에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체제임.

- 우리나라는 발주자별로 유자격자 명부 운용이 미흡하며, 유자격자명부를 운용하더라도 등록업자수가 과다하고, 일본의 '경영사항 심사' 등과 같은 평가 체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음.
  -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를 행하고 있으나, 그 평가결과를 단순히 도급하한액 결정이나 등급제한 입찰 등에 활용하는 수준이며, 공공공사 입찰 참가를 위하여 반드시 시공능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제5장 건설 현장의 기술자 배치 기준

1. 기술자 배치 기준

(1) 「건설업법」상 기술자 배치 기준

- 일본의 경우, 감리기술자의 자격증의 교부는 (재)건설업기술자센터에서 하고 있으며, 「건설업법」상 기술자 배치 제도는 다음과 같음.

<표 5-1> 일본의 「건설업법」상 기술자 배치 규정

<table>
<tr><th colspan="2" rowspan="2"></th><th colspan="3">지정건설업
(토목, 건축, 관, 강구조물, 포장,
전기, 조경 7종류)</th><th colspan="3">기타(왼쪽 이외 21개 업종)</th></tr>
<tr><th colspan="2">허가 종류</th><th colspan="2">특정건설업</th><th>일반건설업</th><th colspan="2">특정건설업</th><th>일반건설업</th></tr>
<tr><td colspan="2">원도급공사에서 하도급 금액 합계(※1)</td><td>3,000만엔 이상</td><td>3,000만엔 미만</td><td>3,000만엔 이상은 하도급 계약 불허</td><td>3,000만엔 이상</td><td>3,000만엔 미만</td><td>3,000만엔 이상은 하도급 계약 불허</td></tr>
<tr><td rowspan="4">공사현장의 기술자 제도</td><td>공사현장에 배치해야할 기술자</td><td>감리기술자</td><td colspan="2">주임기술자</td><td>감리기술자</td><td colspan="2">주임기술자</td></tr>
<tr><td>기술자의 자격요건</td><td>1급 국가자격자, 국토교통성 대신 특별인정자</td><td colspan="2">1급 국가자격자
2급 국가자격자
실무경험자</td><td>1급 국가자격자, 실무경험자</td><td colspan="2">1급 국가자격자
2급 국가자격자
실무경험자</td></tr>
<tr><td>기술자의 현장전임</td><td colspan="6">공공성이 있는 공작물에 관한 건설공사(※2)이고,
도급금액이 2,500만엔(※3) 이상으로 되는 공사</td></tr>
<tr><td>감리기술자 자격증의 필요성</td><td>발주자가 국가, 공공단체 등의 경우에 필요</td><td colspan="2">필요없음</td><td>발주자가 국가, 공공단체 등의 경우에 필요</td><td colspan="2">필요없음</td></tr>
</table>

※1 : 하도급금액 3,000만엔 규정은 건축일식공사의 경우 4,500만엔.
※2 : ①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발주자인 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②철도, 도로, 하천, 비행장, 항만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학교복지시설, 도서관, 미술관, 교회, 병원, 백화점, 호텔, 공동주택 쓰레기처리시설 등(개인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대상)의 건설공사.
※3 : 건축일식공사의 경우 5,000만엔.

- 건설업 허가를 갖고 있는 건설업자는 영업소에 반드시 전임기술자 1명을 보유하지만 실제 공사에서는 현장마다 기술자를 두어야 함(「건설업법」 제 26조).

- 공공공사 입찰의 경우 공사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할 수 없는 건설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확보해 두어야 함. 공사현장에 갖추어야 할 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음.

・주임기술자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크기, 원도급이나 하도급에 관계없이 반드시 공사현장 시공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주임기술자를 두어야 함.

・감리기술자 :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를 도급(원도급)받은 경우, 그 가운데 3,000만엔(건축일식공사의 경우는 4,500만엔) 이상을 하도급 계약하여 시공할 경우에는 주임기술자를 대신하여 감리기술자를 두어야 함.

・주임기술자에서 감리기술자로 변경 : 당초 주임기술자를 설치한 공사에 대폭적인 공사 내용 변경으로 공사 도중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대금 금액이 3,000만엔(건축일식공사의 경우는 4,500만엔) 이상으로 된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건설공사를 맡은 특정건설업자는 주임기술자에 대신하여 소정의 자격을 가지는 감리기술자를 배치해야 함. 단, 공사 시공 초에 이러한 변경이 미리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감리기술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기술자를 배치해야 함.

- 주임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에 대해 공사를 도급받은 기업과의 직접적이고 항상적인 고용 관계가 필요함.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술자의 배치는 인정되지 않음.

・① 직접적인 고용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학교 등에 적을 둔 자나 파견 등)

・② 지속적인 고용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1개 공사 기간만 단기 고용)

・특히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건설업자에 소속된 전임 감리기술자 등은 소속 건설업자가 입찰 신청이 있던 날(지명경쟁과 같이 입찰신청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는 입찰의 집행일, 수의계약은 견적서를 제출한 날) 이전에 3개월 이상 고용 관계에 있는 것이 필요함. 지속적인 고용 관계에 대해서는 감리기술자 자격증의 교부 연월일 혹은 변경 이력 또는 건강보험 피보험자증의 교부 연월일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전문공사의 기술자 배치 기준

- 토목공사업자, 건축공사업자(원도급업체)들이 토목일식공사 또는 건축일식공사를 시공할 경우 이들 공사 중에 다른 전문공사도 포함되어 있으면 각각의 전문 공사에 대해서 주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자(전문 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함. 따라서 원도급업체들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일식공사의 주임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가 그 전문 공사에 대해 주임기술자 자격증도 갖고 있는 경우, 그 자가 전문 기술자를 겸함.

・② 일식공사의 주임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 이외에 별도로 같은 회사 안에서 또는 밖에서 그 전문 공사에 대해 주임기술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전문 기술자로 배치함.

・③ 그 전문 공사에 대해 건설업 허가를 받는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함.

- 또한, 건설업자는 허가를 받은 유형의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다른 건설공사(일명 부대공사)를 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해당 부대공사에 관한 전문 기술자를 둬야함. 스스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부대공사(경미한 공사는 제외)와 관련하여 건설업 허가를 받은 건설업자에게 해당 공사를 시공해야 함.

(3) 전임(專任)의 감리・주임 기술자가 필요한 공사

- 공공성 있는 공사[25]는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2,500만엔(건축일식공사의 경우는 5,000만엔) 이상인 공사에 대해 공사 현장마다 전임 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며, 전임 기술자의 배치는 하도급 공사라도 필요함.

・이때, 공사가 3차까지 하도급되어 3차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1차나 2차 하도급업체는 자기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가 없는 경우도 주임기술자는 현장에 전임해야 함.

---

25) ① 국가, 지방 공공단체의 발주공사
② 철도, 도로, 댐, 상하수도, 전기 사업용 시설 등 공공 공작물의 공사
③ 학교, 백화점, 사무소 등과 같이 다중이용시설의 공사 등을 말한다, 개인 주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사가 대상이 됨. 이때, 공공성 있는 공작물에 관한 중요 공사는 도급금액 2,500만엔(건축일식공사는 5,000만엔) 이상의 개인 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로서 민간 공사도 포함됨.

- 해당 현장의 '주임기술자'의 배치는 다른 공사 현장의 '주임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 및 '영업소 전임기술자'와 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원도급・하도급에 상관없이 상시 지속적으로 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것이 필요함.

・이 때, '영업소의 전임기술자'는 현장 주임기술자 또는 감리기술자가 될 수 없음. '영업소의 전임기술자'는 도급계약의 체결에 임하는 기술적인 지원(공법의 검토, 발주자의 기술적인 설명, 견적 등)을 행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 소속 영업소에 상근하고 있는 것이 원칙임.

・예외적으로 기술자의 전임성이 요구되지 않는 공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로 ① 해당 영업소에서 계약 체결한 건설공사, ② 해당 영업소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정도로 근접한 공사 현장, ③ 해당 영업자와 상시 연락이 되는 상태일 때는 겸임할 수 있음(단, 모든 조건을 채울 필요가 있음).

- 원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약 공기가 전임으로 배치해야 하는 기간이지만 공사현장이 가동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기간, 공장 제작만 가동하고 있는 기간은 반드시 전임을 필요로 하지 않음.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하도급공사(재하도급한 공사가 있을 때는 해당 공사를 포함)의 시공 기간에 기술자를 전임으로 배치해야 함.

- 공공성 있는 공작물에 관한 중요한 공사 중 밀접한 관련이 있는 2개 이상의 공사를 동일한 건설업자가 동일한 장소 또는 근접한 장소에서 시공할 경우에는 동일한 주임기술자가 이들 공사를 전임하여 관리할 수 있음(단, 전임하는 감리기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이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 금액 합계가 3,000만엔(건축일식공사의 경우는 4,500만엔) 이상이 되는 경우 공사 현장에 주임기술자를 대신하여 감리기술자를 배치해야 함.

- 또한, 하도급 대금 금액의 합계가 2,500만엔(건축일식공사의 경우는 5,000만엔) 이상이 되는 경우, 감리기술자 등은 이들 공사 현장에 전임해야 함.

(A공사) 도급금액 2,600만엔 하도급금액 1,800만엔 전임의 주임기술자	(B공사) 도급금액 2,800만엔 하도급금액 1,500만엔 전임의 주임기술자	⇔	A 또는 B를 1개 공사로 본다. 도급금액 5,400만엔 하도급금액 3,300만엔 전임의 감리기술자 배치

- 전임 감리기술자는 통합적인 관리를 실시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공사를 겸임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음. 다만 아래 요건을 충족시키면 동일한 감리기술자가 여러 개의 공사를 전체 관리할 수 있음(발주자는 동일 또는 다른 어느 것도 가능).

・① 계약 공기가 중복되는 복수의 도급계약과 관련된 공사

・② 각 공사의 대상이 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일체성이 인정될 경우(당초의 도급계약 이외의 도급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될 경우에 한함)

(4) JV(공동기업체) 공사의 기술자 배치

- 건설공사의 공동기업체 형태는 a) 특정건설공사의 공동기업체와 b)경상(經常)건설공사의 공동기업체로 나뉨.

・특정건설공사의 공동기업체는 특정 공사의 시공을 목적으로 공사별로 결정되는데, 공사 완공 후 또는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 해산됨. 대상 공사는 대규모로 기술적 고난도의 공사임. 공동기업체 운용준칙에 의해 대표자는 시공능력이 큰 회사이며, 출자 비율이 구성원 중에서 가장 큰 회사로 정함.

・경상건설공사의 공동기업체는 중소・중견 건설업체가 계속적인 협업 관계를 확보함으로써 그 경영능력과 시공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결성된 것임. 발주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신청 시에 경상 JV로 만들어 일정기간 유자격업자로 등록됨. 공동기업체 운용준칙에 의해 대표자 및 출자 비율은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 공동기업체의 시공 방식은 갑형 공동기업체(공동 시공 방식)와 을형 공동기업체(분담 시공 방식)으로 구분됨.

・갑형 공동기업체(공동 시공 방식)는 전체 구성원이 각각 미리 정한 출자 비율에 응하여, 자금, 인원, 기계 등을 갹출하여 일체가 되어 공사를 시공하는 방식임.

・을형 공동기업체(분담 시공 방식)는 각 구성원 간 공동기업체의 맡은 공사를 미리 공구로 분할하고, 각 구성원은 각각 분담한 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하는 방식임.

- 공동기업체의 기술자 배치[26]는 갑형 공동기업체로 하도급대금의 총액이 3,000만엔(건축 일식 : 4,500만엔) 미만・이상인 경우, 을형 공동기업체로 하도급대금의 총액이 3,000만엔(건축 일식 : 4,500만엔) 미만・이상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① 갑형 JV로 하도급대금의 총액이 3,000만엔(건축 일식 : 4,500만엔) 미만인 경우 : 모든 구성원이 주임기술자를 배치[27]하도록 함. 또한, 발주자로부터 도급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2,500만엔(건축일식 : 5,000만엔) 이상은 주임기술자 전원이 해당 공사에 전임하도록 함.

・② 갑형 JV로 하도급대금 총액이 3,000만엔(건축 일식 : 4,500만엔) 이상의 경우 : 구성원 중 1개사(통상은 대표자)가 감리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함. 또한, 다른 구성원이 주임기술자를 배치, 감리기술자 및 주임기술자는 해당 공사에 전임하도록 함.

・③ 을형 JV에서 분담 공사에 관련된 하도급대금의 총액이 3,000만엔(건축 일식 : 4,500만엔) 미만인 경우 : 모든 구성원이 주임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함. 또한, 분담 공사에 관련된 하도급 금액이 2,500만엔(건축 일식 : 5,000만엔) 이상은 설치된 주임기술자가 전임해야 함.

・④ 을형 JV에서 분담 공사에 관련된 하도급 대금의 총액이 3,000만엔(건축 일식 : 4,500만엔) 이상의 경우 : 대표자 및 구성원이어도 분담 공사에 관련된 하도급 대금이 3,000만엔(건축 일식 : 4,500만엔) 이상인 자는 감리기술자를 배치하고, 다른 구성원은 주임기술자를 배치해야 함. 또한, 분담 공사에 관련된 하도급 대금액이 2,500만엔(건축 일식 : 5,000만엔) 이상의 경우 설치된 감리기술자 등이 해당 공사에 전임해야 함.

---

26) 건설공사 발주자가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일 때 원도급업체가 해당 공사 현장에 전임으로 배치하는 기술자는 원도급업체와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고용 관계에 있는 자로서, “감리기술자 자격증”을 교부받고 있거나, 혹은 감리기술자 강습을 받고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해야 함.

27) 공동기업체 운용 준칙에서는 JV공사의 주임기술자는 국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음.

<표 5-2> 특정 건설업의 기술자 배치 기준

건설업 허가 구분	기술자의 전임성	하도급 계약금액의 총액	기술자의 배치	공사 발주자	자격증의 필요성
특정 건설업	공공성이 있는 공작물에 관한 중요한 공사에서 2,500만엔 이상(건축일식공사의 경우는 5,000만엔 이상)	3,000만엔 이상 (건축일식공사의 경우 4,500만엔 이상)	감리 기술자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	필요
				상기 이외	불필요
		3,000만엔 미만 (건축일식공사의 경우 4,500만엔 미만)	주임 기술자		불필요

※ 선임된 감리기술자는 자격자증 및 감리기술자 강습 수료증 휴대가 의무이며, 발주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제시해야 함.

2. '감리기술자' 자격 조건 및 임무[28]

(1) '감리기술자'의 자격 조건

- 일본에서 '감리기술자'란 원도급을 받은 특정건설업자가 해당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 체결한 하도급 계약의 도급대금 총액이 3,000만엔 이상(건축일식공사는 4,500만엔 이상)일 경우에 건설현장에 전임으로 배치하는 기술자를 말함.
  · 우리나라의 '책임감리'나 '공사감리자'와 성격이 다름.

- '감리기술자' 자격자증을 취득하려면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이 필요함.

1) 1급 국가 자격자

- 업종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은 국가자격이 필요함. 관련된 분야(건설부문 등)의 기술사에서도 인정됨.

28) 출처 : (財)建設業技術者センター(http://www.cezaidan.or.jp/managing/about/).

・1급 건축사
・1급 건설기계 시공기사
・1급 건축 시공관리기사
・1급 토목 시공관리기사
・1급 전기공사 시공관리기사
・1급 관(管)공사 시공관리기사
・1급 조원(造園) 시공관리기사

2) 대신 특별 인정자

- 대신특인(大臣特認)이라고도 호칭되며, 특정 업종에서 경과 조치로 인정된 자격자이지만, 감리기술자 강습을 유효한 채 계속 수강할 필요가 있음.
・1급 국가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구제되고 있으며, 자격자증에는 '인정'이라고 기재가 됨.
・현재 이러한 신규 인정은 행하지 않고 있으며, 새롭게 취득할 수 없음.

3) 실무 경험자

- '지정건설업' 업종에서는 소정 규모 이상의 원도급 공사에 종사한 기간을 채운 실무경험자에게도 인정됨.

(2) 감리기술자 배치 요건 및 직무

- 감리기술자는 원도급의 특정건설업자가 해당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 체결한 하도급 계약의 도급대금 총액이 3,000만엔 이상(건축일식공사는 4,500만엔 이상)일 경우에 전임으로 배치하는 기술자로서,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를 막론하고 개인 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가 대상임.

- 감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외 공사'는 단독주택・병용 주택(사무소, 병원 등과 단독주택을 겸한 것)에서 다음의 2가지 조건을 함께 충족시킬 경우임.
  - ① 사무소, 병원 등의 비거주 부분(병용 부분)의 면적이 총 면적의 1/2 이하
  - ② 도급 대금의 총액을 거주 부분과 비거주 부분(병용 부분) 면적비에 대응하여 배분한 경우, 병용 부분에 해당하는 도급 금액이 5,000만엔 미만(건축 일식공사의 경우)

- 감리기술자의 직무는 시공계획 작성, 공정관리, 품질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 및 공사 시행에 종사하는 자의 지도・감독으로서, 감리기술자는 하도급자를 적절하게 지도・감독하는 종합적인 역할을 맡기 때문에 주임기술자보다 더 엄격한 자격과 경험이 요구됨.

<그림 5-1> 감리기술자 자격증의 보유자 수

주 : 1) 2015년 8월 말 현재의 보유자 수임.
2) 1인이 복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중복하여 계상하였음.
자료 : (財)建設業技術者センター.

⑶ 감리기술자 강습 수료증 및 교육기관

-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중요한 민간공사에 배치되는 감리기술자는 감리기술자 강습의 수강이 필요함. 감리기술자 강습 수료증은 강습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등록된 강습 실시기관이 발행하고 있음.

・감리기술자로서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감리기술자 자격자증과 감리기술자 강습 수료증이 필요함.

- 감리기술자 강습 수강 유무와 상관없이 감리기술자 자격증 교부 신청은 가능함. 다만, 국토 교통대신 인정자는 강습을 수강한 후 대신 인정서가 갱신된 후에 자격증이 교부됨.

- 감리기술자 강습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음.

・전국건설연수센터(全國建設研修センター)
・건설업진흥기금(建設業振興基金)
・건설산업진흥센터(建設産業振興センター)
・건설업진흥기금방송강습(建設業振興基金テレビ講習)
・전국토목시공관리기사회연합회(全國土木施工管理技士會連合會)
・카나가와 현 도시정비기술센터(神奈川縣都市整備技術センター)
・종합자격(總合資格)
・니켄학원(日建學院)

<그림 5-2> 감리기술자 자격증 교부 신청과 감리기술자 강습 신청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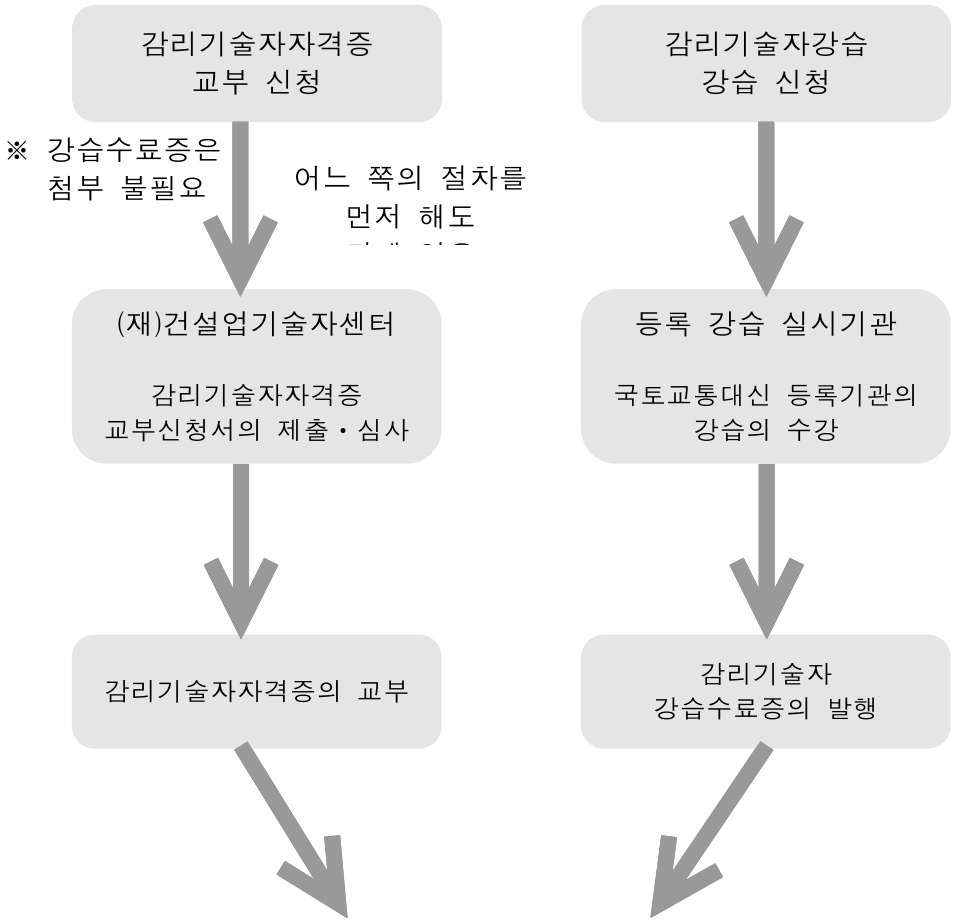

※ 감리기술자 강습을 수강하지 않았어도, 감리기술자 자격증은 교부됨.
감리기술자 강습의 수강에 대하여는 현장배치예정 유무 등, 각 신청자의 판단에 의하여 강습 임시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함.

(4) 1급 국가자격 등에 의한 감리기술자의 자격 요건

- <표 5-3>에서와 같이 1급 국가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자격증 교부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함. 감리기술자가 될 수 있는 건설업종에는 '1'을 표시하고 있음.

<표 5-3> 1급 국가자격 등에 의한 감리기술자 자격 요건

분류	자격명칭	감리기술자로 되는 건설업의 종류 (자격자증의 건설업 종류란에 [1]이 표시된다)																							
		토목	건축	목	미장	비계	石	지붕	전기	管	타일	강구조물	철근	포장	준설	판금	유리	도장	방수	내장	기계	열절연	통신	조경	착정	창호	수도	소방	청소
技術檢定	一級建設機械施工技士	1				1								1															
	一級土木施工管理技士	1				1	1					1		1	1			1									1		
	一級建築施工管理技士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一級電氣工事施工管理技士								1																				
	一級管工事施工管理技士									1																			
	一級造園施工管理技士																							1					
建築士試驗	一級建築士		1	1				1			1	1								1									
技術士試驗 ※ 第二次試驗合格者 ※1	建設 ※2	1				1			1					1	1									1					
	建設「鋼構造및콘크리트」	1				1			1			1		1	1									1					
	農業「農業土木」	1				1																							
	電氣電子 ※3								1														1						
	機械 ※4																				1								
	機械「流体工學」또는「熱工學」									1											1								
	上下水道 ※5									1																	1		
	上下水道「上水道및工業用水道									1															1		1		
	水産「水産土木」	1				1									1														
	森林「林業」																							1					
	森林「森林土木」	1				1																		1					
	衛生工學 ※6									1																			
	衛生工學「水質管理」									1																	1		
	衛生工學「廢棄物管理」									1																	1		1
國土交通大臣認定	土木工事業	1																											
	建築工事業		1																										
	電氣工事業								1																				
	管工事業									1																			
	鋼構造物工事業											1																	
	舖裝工事業													1															
	造園工事業																							1					

주 : ※1 기술사에서의 치환과 관련하여 각 부문은 "종합기술감리"로 바꿀 수 있음. 이 경우의 약어는 "技(總機流)"처럼 과목약어의 앞에 "總"이 붙음.
※2 강구조 및 콘크리트는 제외.
※3 선택 과목은 묻지 않음.
※4 "유체공학"과 "열공학" 2개는 제외.
※5 "상수도 및 공업용 수도"는 제외. ※6 "수질관리"와 "폐기물관리" 2개는 제외.

(5) 실무 경험에 의한 감리기술자의 자격 요건

- <표 5-4>와 같이 필요한 실무 경험 연수를 채우고 있는 자는 자격자증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표 5-4> 실무 경험에 의한 감리기술자의 자격 요건

학력 또는 자격		필요한 실무 경험 연수	
		실무 경험	지도 감독 실무 경험
지정 학과를 이수한 자	학교교육법에 의한 대학·단기 대학·고등전문학교(5년제)을 졸업하고 지정 학과를 이수한 자	졸업 후 3년 이상	2년 이상 (왼쪽 연수와 중복 가능)
	학교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정 학과를 이수한 자	졸업 후 5년 이상	
국가 자격 등을 가지고 있는 자	기술 검정 2급 또는 기능 검정 1급 등을 가지고 있는 자 ※1	—	2년 이상
	2004년 3월 31일 이전에 기능검정시험 2급 등을 가지고 있는 자 ※2	합격 후 1년 이상	2년 이상 (왼쪽 연수와 중복 가능)
	2004년 4월 1일 이후에 기능 검정 시험 2급 등을 가지고 있는 자※2	합격 후 3년 이상	
	전기통신 주임기술자 자격자증을 가지고 있는 자	합격 후 5년 더	
위의 조건 이외의 자		10년 이상	2년 이상 (왼쪽 연수와 중복 가능)

주 : ※1) 2급 건축사, 소방 설비사(갑종, 을종)을 포함.
※2) 사태방지공사 시험 합격자、사태방지공사사를 포함.

(6) 감리 기술자 자격증 교부

- 감리기술자로서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감리기술자 자격증과 감리기술자 강습 수료증이 필요하며, 공사 현장에서는 감리기술자증 휴대가 의무로 발주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제시해야 함.

- 감리기술자 자격증 유효 기간은 감리기술자 자격증 교부 일로부터 5년 간(단, 국토교통대신 인정자의 경우에는 대신 인증서의 유효 기한까지임)으로 감리기술자로서 배치될 경우에는 유효 기한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

・유효 기간이 끝나지 않게 하려면, 만료일 전의 갱신 신청이 필요함.

<그림 5-3> 감리 기술자 자격증(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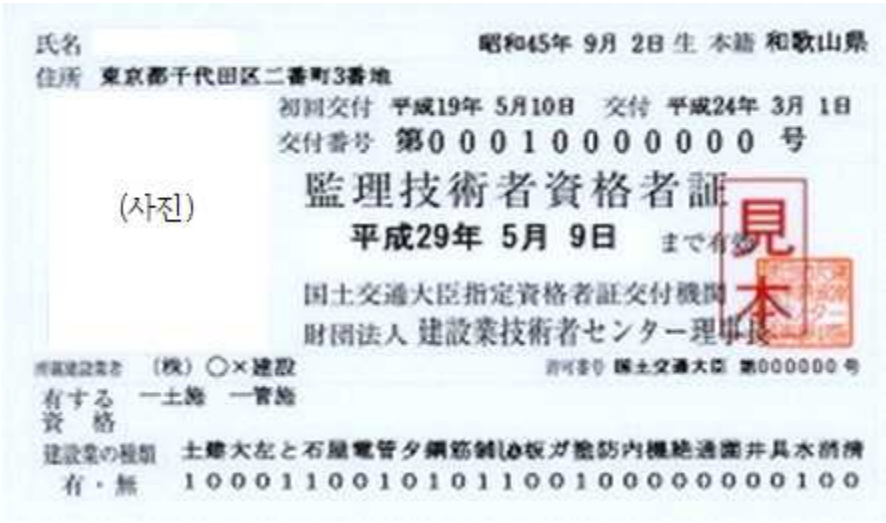

3.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우, 공사 예정금액을 30억원, 100억원, 300억원, 500억원, 700억원으로 구분하여 배치해야 하는 기술자의 등급을 강화하고 있으나,[29] 일본에서는 공사금액의 대소에 따른 배치 기술자의 자격 요건이 단순히 하도급 금액 3,000만엔을 기준으로 감리기술자와 주임기술자로 이원화하여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건설업법」에 의한 기술자 자격 체계는 감리술자와 주임기술자의 두 단계로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음.

・주임기술자와 감리기술자의 배치는 국가 자격자뿐만 아니라 실무 경험자도 가능하

29) 공사예정금액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음.

도록 되어 있음.

- 주임기술자의 경우 1급 국가기술자격자, 2급 국가기술자격자, 실무경험자이며, 감리기술자는 1급 국가기술자격자, 실무경험자, 국토교통성대신의 특별인정자로 규정되어 있음.
- 단, 공공성이 있는 공작물이나 중요한 공사로서 하도급 합계금액이 2,500만엔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증서를 가진 '감리기술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도급금액 3,000만엔 이상일 경우에는 1급 토목시공관리기사 등을 감리기술자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30억원 이하 공사에서는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가진 자도 현장 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공사예정금액	건설기술자의 배치 기준
700억원 이상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공사 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제35조 제2항 관련).

제6장 건설 하도급 및 시공 체제 규정

1. 건설업 하도급 규정

- '일괄하도급'이란 공사를 맡은 건설업자가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하도급으로 그 공사의 전부 또는 독립된 일부를 맡기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지함.
  - 일괄하도급은 공공공사에서는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이 있으면 합법적으로 인정함.
  - 일괄하도급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관점에서 감독 처분(영업정지)이 행해짐.
  - 이 때, 일괄하도급은 하도급공사의 발주한 자뿐만 아니라 하도급자도 감독 처분(영업 정지)의 대상이 됨.

- 따라서 하도급 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관여[30]를 인정받으려면 원도급사의 기술자가 하도급공사의 ① 시공계획 작성, ② 공정관리, ③ 품질관리, ④ 완성검사, ⑤ 안전관리, ⑥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대해서 주체적인 역할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필요함.
  - 또, 원도급사는 ⑦ 발주자와의 협의, ⑧ 주민에의 설명, ⑨ 관공서 등에 대한 신고 등 ⑩ 인근 공사와의 조정 등에 대해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일괄하도급 규정은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도급에 대해서도 적용이 됨. 모회사가 자회사에 하도급공사를 하는 데 있어 별도의 회사인 이상, 실질적 관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괄하도급에 해당함.

---

30) "실질적으로 관여"는 원도급자가 스스로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 및 지도(시공계획의 종합적인 기획, 공사 전체의 정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공사 목적물 공사, 가설물 공사, 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하도급자 간 시공의 조정, 하도급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감독 등) 모든 면에서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함. 또한, 하도급자가 다시 재하도급 할 경우에 대해서도 하도급자 스스로 다시 도급한 전문 작업 항목 부분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 지도를 하는 것을 말함.

(1) 하도급계약 체결 순서

- 적정한 원/하도급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개별 하도급계약이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되어야 함. 도급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견적 의뢰 업체 선정 → 견적 의뢰 → 현장설명・도면 인도 → 질의 응답 → 견적서 제출 → 금액 절충 → 서면 계약'의 흐름으로 구성됨.

- 공사 견적 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견적 의뢰는 ① 공사 명칭, ② 공사 장소, ③ 공사 개요, ④ 예정 공사 기간(전체 공기 및 견적 대상 공사 모두), ⑤ 공법, ⑥ 지급품의 유무, ⑦ 시공 여건 및 범위, ⑧ 지불 조건, ⑨ 현장설명 및 도면 인도의 일시와 장소, ⑩ 견적서의 제출 기한, ⑪ 제약 조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함.
  - 표준 견적 비목은 '직접공사비 + 공통가설비 + 현장관리비 + 제경비'임.
  - 건설공사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려면, 미리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하도급인에게 제시하고 하도급인이 적절하게 견적을 할 만한 기간을 설정해야 함. 하도급 계약 내용의 제시부터 하도급계약 체결 사이에 이루어지는 견적 기간의 경우 ① 500만엔 미만 공사는 1일 이상, ② 500만엔 이상 5,000만엔 미만 공사는 10일 이상, ③ 5,000만엔 이상의 공사는 15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31]
  - 현장설명・도면인도에는 견적 조건의 명확화, 견적비용 명세의 제시·확인, 도면, 사양서의 제시・확인이 기재되어야 함.

- 질의 응답에는 질문 내용의 명확화, 신속한 질문, 직무상 권한을 가진 자들의 대응, 견적 조건 내용의 확정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견적서 제출 시에는 공사 종별마다 "경비의 내역"이 밝혀진 것이어야 함. 이때, 공사 종별은 절취, 성토, 거푸집공사, 철근공사와 같은 "작업 항목" 및 본관, 별관 같은 "목적물별"이어야 하며, 경비 내역은 노무비와 재료비, 공통가설비, 현장관리비, 기계경비 등 별도로 기재되어야 함.

---

31) 예정가격이 ②, ③의 공사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견적 기간을 각각 5일 이내에 한하여 단축할 수 있음.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각각의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의하여 공정한 계약을 체결해야 함. 따라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통상적 필요라고 인정되는 원가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됨.

(2) 하도급 계약서의 구성

- 계약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명시하여 하도급 대금, 시공 범위 등에 관련된 원도급과 하도급 사이의 분쟁을 막고자 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도급공사 착공 전까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상호 교부해야 함. 이때, 계약서에는 「건설업법」에 의하여 다음의 13개 항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됨.

- ① 공사 내용
- ② 도급대금의 금액
- ③ 공사 착수 시점 및 공사 완공 시기
- ④ 선불금 또는 기성고에 따른 임금 지급 시기 및 방법
- ⑤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공사기간 변경, 도급대금 변경 또는 손해 부담 및 금액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 ⑥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기간의 변경 또는 손해 부담 및 그 금액의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 ⑦ 가격 등의 변화 혹은 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액 또는 공사 내용의 변경
- ⑧ 공사의 시공에 의해 제3자가 손해를 받았을 경우 배상금 부담에 관한 규정
- ⑨ 주문자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를 제공하거나 또는 건설기계나 기타 기계를 대여할 때 그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규정
- ⑩ 주문자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시기 및 방법, 인도 시기
- ⑪ 공사 완공 후 하도급대금의 지불 시기 및 방법
- ⑫ 각 당사자의 이행, 지체, 기타 채무 불이행의 경우 지연 이자, 위약금, 기타 배상금
- ⑬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 방법

(3) 하도급 대금의 적정한 납부

- 하도급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으면 하도급자의 경영 안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부실 시공이나 산재사고 등을 유발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음. 따라서 「건설업법」에서는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하도급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도급대금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의 기성대가 지불 또는 준공 지불을 받았을 때 그 지불 대상이 된 공사를 시공한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개월 이내에 지불해야 함.[32]

・하도급대금의 지불은 가능한 한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어음으로 지불하는 경우 어음 기간은 120일 이내로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 해야 함.[33]

・선불금을 받았을 때 하도급자에 대해 자재 구입, 노동자 모집, 기타 건설공사 착수에 필요한 비용을 선불금으로 지불하도록 배려해야 함.[34]

- 하도급공사의 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공사완공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행하고, 검사 후에 하도급자가 인도를 요청할 때는 즉시 공사목적물을 인도받아야 함.[35]

・특정건설업자[36]는 하도급자(특정건설업자 또는 자본금액이 4,000만엔 이상의 법인 제외)로부터 인도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해서 5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불해야 함.[37]

---

32) 하도급대금의 지불은 기성대가 지불 또는 준공 지불의 어느 경우에도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필요함. 1개월 이내라는 지불 기간은 매월 일정한 날에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많다는 건설업계의 상관습을 바탕으로 정해진 것으로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지급되어야 함.

33) 도급대금 지불은 가능한 한 현금 지불로 하고, 현금 지불과 어음 지불을 병용하는 경우라도 지불 대금의 현금 비율을 높이고 노무비 상당분은 현금 지불로 해야 함. 어음 기간이 120일을 넘는 것은 할인 곤란한 어음에 해당할 수 있어서 어음 기간은 120일 이내로 함.

34)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자재 구입, 노동자 모집 등 건설공사 착수를 위해서 필요한 준비금이 선불금으로 지불되는 관행이 있는데, 이러한 자재 구입 등의 준비 행위는 원도급자 뿐만 아니라 하도급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 것도 많아 원도급인이 선불금을 받았을 때는 하도급자에 대해서도 공사 착수에 필요한 비용을 선불금으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음.

35) 하도급자의 “공사완성 통지”나 “인도 요구”는 구두도 가능하지만, 훗날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서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36) 특정건설업체는 원도급으로서의 의무와 특정건설업자의 의무 양쪽의 의무를 가지므로, 기성고 지급 및 준공 지불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혹은 인도 신청일로부터 50일 이내의 지불기일(지불기일 규정이 없으면 인도 신청일)중 앞선 것이 실제 지불일로 됨.

2. 건설현장의 시공 체제 관리

(1) 시공체제대장의 개요

- '특정건설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총액이 3,000만엔(건축일식공사는 4,500만엔) 이상일 경우, 시공체제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음.

- 시공체제대장은 하도급, 재하도급 등 공사 시공을 맡는 모든 업체명, 각 시행 범위, 각 기술자 성명 등을 기재한 기록을 말함. 시공체제대장의 작성을 통해 원도급업체의 현장시공체제를 파악함으로써 ① 품질·공정·안전 등 시공상의 트러블의 발생, ② 불량 부적격업체의 시공 참가, 「건설업법」 위반(일괄 하도급 등), ③ 안이한 중층 하도급에 따른 생산 효율의 저하 등을 방지할 수 있음.

- 시공체제대장은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를 불문하고 작성해야 하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공사현장마다 갖추어 둘 필요가 있음. 또, 「입찰계약적정화법」의 규정에 의해 공공공사에서는 시공체제대장의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함.

(2) 시공체제대장의 작성 순서

- 1차 하도급 체결 후 원도급인 특정건설업자는 1차 하도급자에게 시공체제대장 작성공사를 통지하는 동시에 공사현장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그 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게시하고 시공체제대장 및 시행체계도[38]를 정비함.

---

37) 특정건설업자 제도는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서 마련된 것이며, 특정건설업자에 대해서는 발주자로부터 지불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사완성을 확인한 후 하도급자로부터 공사목적물의 인도 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5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8) 시행체계도는 작성된 시공체제대장에 근거하여 각 도급인의 시공분담관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작도하는 것임. 시공체계도를 봄으로써 공사에 종사하는 관계자 전원이 공사의 시공분담관계를 파악할 수 있음. 시행체계도는 공사기간 중 공사현장 내 공사관계자가 보기 쉬운 장소 및 공중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해야 함. 따라서 공사 진행에 의해 표시해야 할 하도급업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시행체계도

- 2차 하도급 체결 후 1차 하도급자는 특정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통지서[39](첨부서류인 도급계약서의 사본을 포함)을 제출하는 동시에 2차 재하도급자에게 시공체제대장 작성공사를 통지함.

・특정건설업자는 1차 하도급자가 제출한 재하도급통지서에 의해 또는 스스로 파악한 정보에 근거해 시공체제대장 및 시행체계도를 정비함.

<시공체제 작성대상 공사의 통지 사례>

하도급인이 된 여러분께

이번에 하도급인으로서 귀사에 시공을 분담하게 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법」 제24조의 7 제1항에 따라 시공체제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① 이 건설공사의 도급인(회사)은 그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건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에 맡긴 때는 「건설업법」 제24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건설업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에 규정한 도급통지서를 당사에게 다음 장소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한번 통지한 사항이나 서류에 변경이 생겼을 때도 지체없이 변경 연월일을 부기하여 같은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귀사가 공사를 맡긴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도 이 서면을 복사하여 교부하고, “만약 또 다른 자에게 공사를 맡긴 때는 특정건설업자에게 ①의 통지서 제출과 그에 대한 서면 사본의 교부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해야 한다.

작성 특정건설업자의 상호 ○○건설(주)

재하도급통지서 제출 장소 공사현장 내 건설스테이션/△△영업소

- 3차 하도급체결 후 2차 하도급자는 특정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통지서(첨부서류인 도급계약서 사본을 포함)을 제출(1차 하도급자를 경유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함과

의 표시 변경을 해야 함.

39) 시공체제대장의 작성이 의무화된 데에서 하도급자가 그 공사를 다시 재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인 특정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통지서를 제출해야 함. 재하도급통지서의 내용은 ① 자사에 관한 사항, ② 자사가 주문자와 체결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③ 자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재하도급자에 관한 사항, ④ 자사가 재하도급자와 체결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임.

동시에 3차 하도급자에게 시공체제대장 작성 공사라는 점을 통지함.

- 특정건설업자는 2차 하도급자로부터 제출된 재하도급통지서 혹은 스스로 정보를 기재하거나 하도급통지서를 첨부하는 방법에 의해 시공체제대장 및 시행체계도를 정비함.

<현장의 게시문 사례>

> 이 건설공사의 하도급인이 되고, 그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맡기는 자는 지체없이 공사현장 내 건설 스테이션/△△영업소까지, 「건설업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에 규정한 재하도급통지서를 제출하세요. 한번 통지한 사항이나 서류에 변경이 생겼을 때도 변경의 연월일을 부기하여 같은 서류를 제출하세요.
>
> ○○ 건설(주)

- 모든 업체는 서면으로 시공체제대장을 만들어야 하며, 하도급 공사를 발주할 때 원도급업체의 명칭, 재하도급 통지가 필요한 취지, 하도급업체에 대한 서면 통지 사례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3) 시공체제대장의 기재 내용 및 첨부 서류

- 시공체제대장에는 특정건설업자의 허가에 관한 사항,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 하도급자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함.
  - 기재 내용에는 ① 공사 내용과 건설업 허가, ② 배치 기술자의 이름과 자격, ③ 도급계약 관계가 포함되어야 함.

- 시공체제대장의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음.
  - ① 발주자와 도급계약서(작성 특정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계약서 사본)
  - ② 하도급계약서(1차 하도급과의 계약서 사본 및 2차 하도급 이하의 도급인이 체결한 모든 도급계약서의 사본)
  - ③ 원도급 감리기술자(전문기술자) 관계(감리기술자가 감리기술자 자격을 가지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감리기술자가 소속 건설업자와 직접적이고 항상적인 고용 관계에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의 사본, 전문 기술자의 자격 및 고용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등)

(4) 시공체제대장에 기재된 하도급자의 범위

- 시공체제대장 등에 기재해야 하는 하도급자의 범위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모든 하도급자(무허가업자를 포함)이므로 1차 하도급뿐만 아니라 2차 하도급, 3차 하도급 등도 기재 대상이 됨.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자재 납품 및 조사 업무, 운반 업무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자 등에 대해서는 「건설업법」상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사양서 등에 의해 발주자가 기재를 요구하고 있을 때에는 기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1) 하도급 장부의 기재 사항

- 「건설업법」은 도급계약의 내용을 적절히 정리한 장부를 각 영업소마다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장부는 5년간 보존 의무가 있음). 장부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영업소의 대표자의 이름과 그 취임일
・② 주문자와 체결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명칭, 공사현장의 소재지, 주문자와 계약일, 주문자의 상호, 주소, 허가번호, 주문자로부터 받은 준공검사의 연월일, 공사목적물을 주문자에게 인계한 연월일)
・③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40](하도급자에게 맡긴 건설공사의 명칭, 공사현장의 소재지, 하도급 계약일, 하도급자의 상호, 주소, 허가번호, 하도급공사의 완성을 확

40) 특정건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문자(원도급공사에 국한되지 않는다)로서 일반건설업자(자본금이 4,000만엔 이상인 법인 제외)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 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도 기재가 필요하다.
・① 지불한 하도급대금의 금액, 지불한 연월일 및 지불 수단
・② 지불 어음을 교부한 때에는 그 어음의 금액, 교부 연월일, 어음 만기
・③ 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때는 그 후의 하도급대금의 지불 잔액
・④ 지연 이자액 지급일(하도급자로부터 인도 신청으로부터 50일을 경과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지연 이자(연 14.6%)의 지불에 관한 것)

인하기 위해서 '자사가 실시한 검사'의 연월일, 하도급공사의 목적물에 대해서 하도급업체로부터 인도받은 연월일)

2) 하도급 장부의 첨부 서류

- 장부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 ① 계약서 또는 그 사본(전자적 기록 가능)
  - ② 특정건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문자(원도급공사에 국한되지 않는다.)로서 일반건설업자(자본금이 4,000만엔 이상의 법인 기업 제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불이 끝난 금액, 지불한 연월일 및 지불 수단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등)나 그 사본
  - ③ 특정건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주문자(원도급공사에 한한다.)로 되고, 3,000만엔[41] 이상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 현장에 비치한 시행체제대장에서 다음에 나타난 내용을 서류로 첨부해야 함.[42]

- 해당 공사에 관하여 실제로 공사현장에 비치한 감리기술자의 이름, 보유하고 있는 감리기술자 자격 - 감리기술자 이외에 전문 기술자를 둔 때에는 그 사람의 이름, 그 자가 관리를 담당한 건설공사의 내용, 보유하고 있는 주임기술자 자격 - 하도급자(말단까지 전 업체를 말한다. 이하 동일)의 상호, 허가 번호 - 하도급자에게 맡긴 건설공사의 내용, 공기 - 하도급자가 실제로 공사 현장에 배치한 주임기술자 이름, 보유하고 있는 주임기술자 자격 - 하도급자가 주임기술자 이외에 전문기술자를 둔 때에는 그 사람의 이름, 그 자가 관리를 담당한 건설공사의 내용, 보유하고 있는 주임기술자 자격

41) 건축일식공사의 경우는 4,500만엔, 1차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의 총액에서 판단.

42) 공사 완료 후에 시공체제대장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

3.「건설업법」위반 등 조치

- 건설업체가「건설업법」이나「입찰계약적정화법」을 위반하면,「건설업법」의 감독 처분의 대상이 됨. 감독 처분에는 지시 처분, 영업정지 처분, 허가취소 처분의 3종류가 있음.

・지시 처분이란, 법령 및 부적정한 사실을 시정하기 위해서 기업이 어떤 일을 해야 하거나 감독행정청이 명령하는 것으로서, 건설업체가「건설업법」을 위반하면 감독행정청에 따른 지시 처분의 대상이 됨.

・건설업자가 지시 처분에 따르지 않을 때, 감독행정청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됨.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이나「독점금지법」,「형법」등 법령에 위반한 경우 등에는 지시 처분 없이 직접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기간은 1년 이내로 감독 행정청이 판단하고 결정함.

・부정한 수단으로 건설업 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영업하는 등의 경우 감독행정청에 의해서 건설업허가의 취소가 이루어짐.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이나「독점금지법」,「형법」등 법령에 위반한 경우 등에서 위반 정도가 특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시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없이 곧바로 허가 취소가 됨.

- 건설공사분쟁심사회는 공사에 균열, 누수 등의 결함(하자)을 보수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기관으로서, 중앙(국토교통성)과 각 도도부현에 두고 있음.

4. 시사점

(1) 일괄 하도급시 원도급자 외 하도급자 처벌

- 국내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따라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일본 역시 일괄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제2항 제3호에서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 즉 일괄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일괄하도급'은 하도급공사를 발주한 자 뿐만 아니라 하도급자도 감독처분, 즉 영업정지의 대상이 됨.

(2) 하도급 공사 비용의 견적 기간 명시

- 일본의 「건설업법」에 규정된 하도급계약서 관련 규정은 우리나라의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유사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의 규정도 국내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하도급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하도급대금 견적기간을 예정금액별로 명시하고 있는 특성이 있음.

(3) 하도급, 재하도급을 포함하여 시공체제대장 작성

- 우리나라에서는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공사대장을 작성·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시공체제대장 등록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제도의 도입 취지와 등록 자료의 범위, 의무화 대상 업체 등에서 차이가 존재함.
  - 우리나라의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공사대장 등록은 사실상 공사실적을 등록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본의 시공체제대장은 공사실적과 더불어 2단계 및 3단계 하도급자까지 시공체제대장에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함.

참고 문헌

해외 문헌

・(財)建設業適正取引推進機構 편저, 建設業法 Q&A, 大成出版社, 2012. 7
・日本 山口縣廳, Q&A 建設業法に基づく適正な施工体制について, 2007
・國土交通省 土地建設産業局 建設業課, 建設業許可業者數の調査結果について, 2014. 6
・國土交通省, 経営事項審査の審査項目及び基準の改正について, 2015
・日本宮城縣廳, 経営事項審査の評点算出ハンドブック. 2014
・建設業法に基づく適正な施工体制についてQ&A(www.mlit.go.jp)
・國土交通省, ,施工体制台帳等活用マニュアル
・公共工事入札制度 運用實務研究會 編著, 公共工事入札制度 運用의 實務, (株)ぎょうせい 2007. 7
・(株)建設經營サ-ビス, よくわかる公共工事入札のしくみ, 日本實業出版社, 2006. 6

국내 문헌

・조달청, 일본 정부조달시장 조사보고서, 2003
・김태완, 일본 정부조달시장,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2005. 7 pp.7-20

해외 사이트

・일본 국토교통성(http://www.mlit.go.jp)
・(재)건설업기술자센터(http://www.cezaidan.or.jp)

Abstract

A study on the construction business license and the field organizational system of Japan - the present regulations and its implications -

This study aims at drawing the implications for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of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nstruction business licensing system, division of construction business, subcontracting regulations, and construction regulations of Japan. This study consists of four parts. The main idea of each part is as follows:

The first section presents the understanding of the license system for construction business in Japan. This chapter analyzes the legal requirements for permitting construction business license and summarizes the status of construction business license in Japan. The second section is about the business scope of the construction licenses in Japan. It is compared to Korean business scope of the construction registration sectors. The third section studies the evaluation elements and the criteria of pre-qualification for enrolling in the approved list of project owners. The fourth section presents the regulations for qualification of a construction manager on job site; then, they are compared to those of Korea. Finally, this study describes the regulation of construction subcontract system in Japan.

By comparing the construction business license and the field organazational system on job site between Japan and Korea, the severa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re provided to resolve the current issues and improve the construction system and policies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저자 소개

최민수(mschoi@cerik.re.kr)
공학박사(충남대 졸, 건설시공 전공), 시공기술사
호주 New South Wales대학교 방문연구위원
일본 국토교통성 건축연구소 위촉연구원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겸임교수
대한건축학회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한국건축시공학회 제도정책분과위원장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현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최은정(kciel21@cerik.re.kr)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 석사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현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